다산 월드메르디앙 센텀하이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5.09.05.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u>종합저축으로 전환</u>한 경우, 해당 주택의 <u>순위확인서</u>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566-4630 / 홈페이지 www.다산월드메르디앙센텀하이.com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경상 ! 	북도 고령군 거주자	경상북 <u>!</u>	도 및 대구광역시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u>.</u>	전매제한	거주의무	기간	분양가성	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없음	없음		미적	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5.09.05.(금)	2025.09.15.(월)	2025.09.16.(화)	2025.09.17.(수)	2025.09.23.(화)	2025.09.27.(토)~ 2025.09.29.(월)	2025.10.04.(토)~ 2025.10.06.(월)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u>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u>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06.30.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일반공급				
1264H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	치금 충족	1순위(6개월	 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적용	-	적용	-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 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 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 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 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다산월드메르디앙센텀하이.com)에 공개 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 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0			
APT잔여세대 (무순위 / 임의공급 / 불법행위재공급)	()	X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단지 유의사항

2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9.05.(급)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고령군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대구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고령군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5.09.15.(월)	2025.09.16.(화)	2025.09.17.(수)	2025.09.23.(화)	2025.09.27.(토)~ 2025.09.29.(월)	2025.10.04.(토)~ 2025.10.06.(월)
방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 ■ (현장접수) 청약통장 7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 대구광역시 달성	군 화원읍 비슬로 2472)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고령군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없음	없음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3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고령군 건축과 36554호(2025.09.04.)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좌학리 139-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최고 39층 3개동 총 463세대

[특별공급 241세대(기관추천 43세대, 다자녀가구 43세대, 신혼부부 103세대, 노부모부양 13세대, 생애최초 39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2026년 07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m², 세대)

주택		즈테침		주	택공급면적(m²)	기타	계약	세대별	총공급			특별공급	H 세대수			일반공급	최하층
구역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면적	세네필 대지지분	세대수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설립 세대수	우선배정 세대수
	01	074.4881A	74A	74.4881	26.6576	101.1457	43.8398	144.9855	29.5013	74	7	7	17	2	6	39	35	2
	02	074.9574B	74B	74.9574	26.7174	101.6748	44.1161	145.7909	29.6872	36	3	3	8	1	3	18	18	1
	03	076.2090	76	76.2090	27.4957	103.7047	44.8527	148.5574	30.1829	36	3	3	8	1	3	18	18	1
	04	084.5078A	84A	84.5078	30.6375	115.1453	49.7370	164.8823	33.4697	243	24	24	55	7	21	131	112	7
	05	084.7634B	84B	84.7634	29.6529	114.4163	49.8875	164.3038	33.5709	68	6	6	15	2	6	35	33	2
2025000259	06	103.4987	103	103.4987	38.2029	141.7016	60.9140	202.6156	40.9911	2	-	-	-	-	-	-	2	-
	07	115.2714	115	115.2714	43.1541	158.4255	67.8429	226.2684	45.6537	1	-	-	-	-	-	-	1	-
	08	121.7305A	121A	121.7305	43.9671	165.6976	71.6445	237.3421	48.2119	1	-	-	-	-	-	-	1	-
	09	121.5867B	121B	121.5867	44.2065	165.7932	71.5598	237.3530	48.1549	1	-	-	-	-	-	-	1	-
	10	121.1377C	121C	121.1377	43.9804	165.1181	71.2956	236.4137	47.9771	1	-	-	-	-	-	-	1	-
					합 계					463	43	43	103	13	39	241	222	13

- ┃• 주택형 구분은 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카탈로그,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 주택형 표기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m²) X 0.3025)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전 기/기계실,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부대시설 등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기되어,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과의 합계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소수점 이하의 면적변동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음)
- ▶ 각 세대별 기타공용면적은 기타공용면적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적 배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주택법」및 관련법령에 의거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사업계획변경,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절차 등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습니다.
- ▶ 각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	(약식표기)		74A	74B	76	84A	84B	합 계
	국가-	1	1	-	4	1	7	
	장기복무	제대군인	1	-	1	4	1	7
기계춰 트병고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1	-	-	3	1	5
기관추천 특별공급			2	1	1	5	1	10
		경상북도	1	-	1	4	1	7
	장애인	대구광역시	1	1	-	4	1	7
다자녀가-	구 특별공급		7	3	3	24	6	43
신혼부부	- 특별공급		17	8	8	55	15	103
노부모부당	양 특별공급		2	1	1	7	2	13
생애최초	트 특별공급	6	3	3	21	6	39	
합	39	18	18	131	35	241		

(단위 : 세대 / 원)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공급	금액		계약	금(5%)	중도금(60%)		잔금(35%)
약식	동별	층	해당					1차계약금	2차계약금	1차(30%)	2차(30%)	선금(35%)
표기	라인별	구분	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시	계약 후 30일 이내	2025.11.28	2026.01.30	입주지정일
		2층	2	37,215,420	262,184,580	-	299,400,000	10,000,000	4,970,000	89,820,000	89,820,000	104,790,000
		3층	2	37,600,750	264,899,250	-	302,500,000	10,000,000	5,125,000	90,750,000	90,750,000	105,875,000
		4층	2	37,998,510	267,701,490	-	305,700,000	10,000,000	5,285,000	91,710,000	91,710,000	106,995,000
		5층	2	38,383,840	270,416,160	-	308,800,000	10,000,000	5,440,000	92,640,000	92,640,000	108,080,000
74A	102동(4,5호)	6-9층	8	38,781,600	273,218,400	-	312,000,000	10,000,000	5,600,000	93,600,000	93,600,000	109,200,000
74A	102万(4,3至)	10-14층	10	39,166,930	275,933,070	-	315,100,000	10,000,000	5,755,000	94,530,000	94,530,000	110,285,000
		15-19층	10	39,564,690	278,735,310	-	318,300,000	10,000,000	5,915,000	95,490,000	95,490,000	111,405,000
		20-27층	16	39,950,020	281,449,980	-	321,400,000	10,000,000	6,070,000	96,420,000	96,420,000	112,490,000
		28-35층	16	40,347,780	284,252,220	-	324,600,000	10,000,000	6,230,000	97,380,000	97,380,000	113,610,000
		36-39층	6	40,733,110	286,966,890	-	327,700,000	10,000,000	6,385,000	98,310,000	98,310,000	114,695,000
		1층	1	37,202,990	262,097,010	-	299,300,000	10,000,000	4,965,000	89,790,000	89,790,000	104,755,000
		2층	1	37,600,750	264,899,250	-	302,500,000	10,000,000	5,125,000	90,750,000	90,750,000	105,875,000
		3층	1	37,998,510	267,701,490	-	305,700,000	10,000,000	5,285,000	91,710,000	91,710,000	106,995,000
		4층	1	38,383,840	270,416,160	-	308,800,000	10,000,000	5,440,000	92,640,000	92,640,000	108,080,000
		5층	1	38,781,600	273,218,400	-	312,000,000	10,000,000	5,600,000	93,600,000	93,600,000	109,200,000
74B	103동(3호)	6-9층	4	39,179,360	276,020,640	-	315,200,000	10,000,000	5,760,000	94,560,000	94,560,000	110,320,000
		10-14층	5	39,577,120	278,822,880	-	318,400,000	10,000,000	5,920,000	95,520,000	95,520,000	111,440,000
		15-19층	5	39,974,880	281,625,120	-	321,600,000	10,000,000	6,080,000	96,480,000	96,480,000	112,560,000
		20-27층	8	40,372,640	284,427,360	-	324,800,000	10,000,000	6,240,000	97,440,000	97,440,000	113,680,000
		28-35층	8	40,757,970	287,142,030	-	327,900,000	10,000,000	6,395,000	98,370,000	98,370,000	114,765,000
		36-39층	1	41,155,730	289,944,270	-	331,100,000	10,000,000	6,555,000	99,330,000	99,330,000	115,885,000
7.6	100 5 (14)	1층	1	37,749,910	265,950,090	-	303,700,000	10,000,000	5,185,000	91,110,000	91,110,000	106,295,000
76	103동(4호)	2층	1	38,160,100	268,839,900	-	307,000,000	10,000,000	5,350,000	92,100,000	92,100,000	107,450,000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I			T		I						
		3층	1	38,557,860	271,642,140	-	310,200,000	10,000,000	5,510,000	93,060,000	93,060,000	108,570,000
		4층	1	38,955,620	274,444,380	-	313,400,000	10,000,000	5,670,000	94,020,000	94,020,000	109,690,000
		5층	1	39,365,810	277,334,190	-	316,700,000	10,000,000	5,835,000	95,010,000	95,010,000	110,845,000
		6-9층	4	39,763,570	280,136,430	-	319,900,000	10,000,000	5,995,000	95,970,000	95,970,000	111,965,000
		10-14층	5	40,161,330	282,938,670	-	323,100,000	10,000,000	6,155,000	96,930,000	96,930,000	113,085,000
		15-19층	5	40,559,090	285,740,910	-	326,300,000	10,000,000	6,315,000	97,890,000	97,890,000	114,205,000
		20-27층	8	40,969,280	288,630,720	-	329,600,000	10,000,000	6,480,000	98,880,000	98,880,000	115,360,000
		28-35층	8	41,367,040	291,432,960	-	332,800,000	10,000,000	6,640,000	99,840,000	99,840,000	116,480,000
		36-39층	1	41,764,800	294,235,200	-	336,000,000	10,000,000	6,800,000	100,800,000	100,800,000	117,600,000
		2층	3	43,430,420	305,969,580	-	349,400,000	10,000,000	7,470,000	104,820,000	104,820,000	122,290,000
		3층	3	43,877,900	309,122,100	-	353,000,000	10,000,000	7,650,000	105,900,000	105,900,000	123,550,000
		4층	3	44,337,810	312,362,190	-	356,700,000	10,000,000	7,835,000	107,010,000	107,010,000	124,845,000
		5층	3	44,797,720	315,602,280	-	360,400,000	10,000,000	8,020,000	108,120,000	108,120,000	126,140,000
	102동(1호),	6-9층	12	45,257,630	318,842,370	-	364,100,000	10,000,000	8,205,000	109,230,000	109,230,000	127,435,000
	103동(1,2호)	10-14층	15	45,705,110	321,994,890	-	367,700,000	10,000,000	8,385,000	110,310,000	110,310,000	128,695,000
		15-19층	15	46,165,020	325,234,980	-	371,400,000	10,000,000	8,570,000	111,420,000	111,420,000	129,990,000
		20-27층	24	46,624,930	328,475,070	-	375,100,000	10,000,000	8,755,000	112,530,000	112,530,000	131,285,000
		28-35층	24	47,084,840	331,715,160	-	378,800,000	10,000,000	8,940,000	113,640,000	113,640,000	132,580,000
		36-39층	9	47,544,750	334,955,250	-	382,500,000	10,000,000	9,125,000	114,750,000	114,750,000	133,875,000
		3층	2	43,666,590	307,633,410	-	351,300,000	10,000,000	7,565,000	105,390,000	105,390,000	122,955,000
		4층	2	44,114,070	310,785,930	-	354,900,000	10,000,000	7,745,000	106,470,000	106,470,000	124,215,000
		5층	2	44,573,980	314,026,020	-	358,600,000	10,000,000	7,930,000	107,580,000	107,580,000	125,510,000
	101日(2 4字)	6-9층	8	45,033,890	317,266,110	-	362,300,000	10,000,000	8,115,000	108,690,000	108,690,000	126,805,000
	101동(3, 4호)	10-14층	10	45,481,370	320,418,630	-	365,900,000	10,000,000	8,295,000	109,770,000	109,770,000	128,065,000
		15-19층	10	45,941,280	323,658,720	-	369,600,000	10,000,000	8,480,000	110,880,000	110,880,000	129,360,000
		20-27층	16	46,388,760	326,811,240	-	373,200,000	10,000,000	8,660,000	111,960,000	111,960,000	130,620,000
044		28-35층	14	46,848,670	330,051,330	-	376,900,000	10,000,000	8,845,000	113,070,000	113,070,000	131,915,000
84A		3층	1	43,442,850	306,057,150	-	349,500,000	10,000,000	7,475,000	104,850,000	104,850,000	122,325,000
		4층	1	43,902,760	309,297,240	-	353,200,000	10,000,000	7,660,000	105,960,000	105,960,000	123,620,000
		5층	1	44,350,240	312,449,760	-	356,800,000	10,000,000	7,840,000	107,040,000	107,040,000	124,880,000
	101 = (1 =)	6-9층	4	44,797,720	315,602,280	-	360,400,000	10,000,000	8,020,000	108,120,000	108,120,000	126,140,000
	101동(1호)	10-14층	5	45,257,630	318,842,370	-	364,100,000	10,000,000	8,205,000	109,230,000	109,230,000	127,435,000
		15-19층	5	45,705,110	321,994,890	-	367,700,000	10,000,000	8,385,000	110,310,000	110,310,000	128,695,000
		20-27층	8	46,165,020	325,234,980	-	371,400,000	10,000,000	8,570,000	111,420,000	111,420,000	129,990,000
		28-35층	6	46,612,500	328,387,500	-	375,000,000	10,000,000	8,750,000	112,500,000	112,500,000	131,250,000
		2층	1	42,771,630	301,328,370	-	344,100,000	10,000,000	7,205,000	103,230,000	103,230,000	120,435,000
		3층	1	43,219,110	304,480,890	-	347,700,000	10,000,000	7,385,000	104,310,000	104,310,000	121,695,000
		4층	1	43,679,020	307,720,980	-	351,400,000	10,000,000	7,570,000	105,420,000	105,420,000	122,990,000
		5층	1	44,126,500	310,873,500	-	355,000,000	10,000,000	7,750,000	106,500,000	106,500,000	124,250,000
	100 = (0 ±)	6-9층	4	44,573,980	314,026,020	-	358,600,000	10,000,000	7,930,000	107,580,000	107,580,000	125,510,000
	102동(3호)	10-14층	5	45,021,460	317,178,540	-	362,200,000	10,000,000	8,110,000	108,660,000	108,660,000	126,770,000
		15-19층	5	45,481,370	320,418,630	-	365,900,000	10,000,000	8,295,000	109,770,000	109,770,000	128,065,000
		20-27층	8	45,928,850	323,571,150	-	369,500,000	10,000,000	8,475,000	110,850,000	110,850,000	129,325,000
		28-35층	8	46,376,330	326,723,670	-	373,100,000	10,000,000	8,655,000	111,930,000	111,930,000	130,585,000
		36-39층	3	46,823,810	329,876,190	-	376,700,000	10,000,000	8,835,000	113,010,000	113,010,000	131,845,000
		2층	1	42,721,910	300,978,090	-	343,700,000	10,000,000	7,185,000	103,110,000	103,110,000	120,295,000
		3층	1	43,169,390	304,130,610	-	347,300,000	10,000,000	7,365,000	104,190,000	104,190,000	121,555,000
84B	102동(2호)	4층	1	43,616,870	307,283,130	-	350,900,000	10,000,000	7,545,000	105,270,000	105,270,000	122,815,000
		5층	1	44,064,350	310,435,650	-	354,500,000	10,000,000	7,725,000	106,350,000	106,350,000	124,075,000
	1	1	1	1	1		1	1	1	1		

		6-9층	4	44,511,830	313,588,170	-	358,100,000	10,000,000	7,905,000	107,430,000	107,430,000	125,335,000
		10-14층	5	44,971,740	316,828,260	-	361,800,000	10,000,000	8,090,000	108,540,000	108,540,000	126,630,000
		15-19층	5	45,419,220	319,980,780	-	365,400,000	10,000,000	8,270,000	109,620,000	109,620,000	127,890,000
		20-27층	8	45,866,700	323,133,300	-	369,000,000	10,000,000	8,450,000	110,700,000	110,700,000	129,150,000
		28-35층	8	46,314,180	326,285,820	-	372,600,000	10,000,000	8,630,000	111,780,000	111,780,000	130,410,000
		36-39층	3	46,761,660	329,438,340	-	376,200,000	10,000,000	8,810,000	112,860,000	112,860,000	131,670,000
		3층	1	42,734,340	301,065,660	-	343,800,000	10,000,000	7,190,000	103,140,000	103,140,000	120,330,000
		4층	1	43,181,820	304,218,180	-	347,400,000	10,000,000	7,370,000	104,220,000	104,220,000	121,590,000
		5층	1	43,629,300	307,370,700	ı	351,000,000	10,000,000	7,550,000	105,300,000	105,300,000	122,850,000
	101동(2호)	6-9층	4	44,076,780	310,523,220	ı	354,600,000	10,000,000	7,730,000	106,380,000	106,380,000	124,110,000
	101등(2포)	10-14층	5	44,511,830	313,588,170	-	358,100,000	10,000,000	7,905,000	107,430,000	107,430,000	125,335,000
		15-19층	5	44,959,310	316,740,690	-	361,700,000	10,000,000	8,085,000	108,510,000	108,510,000	126,595,000
		20-27층	8	45,406,790	319,893,210	-	365,300,000	10,000,000	8,265,000	109,590,000	109,590,000	127,855,000
		28-35층	6	45,854,270	323,045,730	-	368,900,000	10,000,000	8,445,000	110,670,000	110,670,000	129,115,000
103	103동(1호)	39층	1	64,726,850	455,066,500	45,506,650	565,300,000	10,000,000	18,265,000	169,590,000	169,590,000	197,855,000
103	101동(3호)	35층	1	63,787,950	448,465,500	44,846,550	557,100,000	10,000,000	17,855,000	167,130,000	167,130,000	194,985,000
115	102동(4호)	39층	1	71,356,400	501,676,000	50,167,600	623,200,000	10,000,000	21,160,000	186,960,000	186,960,000	218,120,000
121A	101동(1호)	34층	1	74,367,750	522,847,500	52,284,750	649,500,000	10,000,000	22,475,000	194,850,000	194,850,000	227,325,000
121B	102동(1호)	39층	1	75,890,600	533,554,000	53,355,400	662,800,000	10,000,000	23,140,000	198,840,000	198,840,000	231,980,000
121C	103동(3호)	37층	1	75,581,450	531,380,500	53,138,050	660,100,000	10,000,000	23,005,000	198,030,000	198,030,000	231,035,000

■ 공통 유의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향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구법상의 등록세 통합)가 미포함 된 가격입니다.(추후 취득세 산정 시 발코니확장비용과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비용이 합산되어 산정됨)
-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발코니확장 공사비용과 유상옵션 등] 비용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유상옵션의 계약은 분양 계약 시 또는 분양계약 이후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이며, 본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공사가 유상으로 시공됩니다.)
-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승강기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공용면적 등에 대 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별 대지지분은 각 시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고,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대지가 별도 구분없이 대지를 공유하며, 아파트(공동주택)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아파트(공동주택)의 대지지분을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 하였고,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차는 타입별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근린생 활시설로 할애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고 실별 안목치수는 유상옵션 마감 전 마감내용으로 반영하였으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 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입주증 발급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가준으로 합니다. 단,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 중 50% 공정 시점 이후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 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대출취급기관과 관련한 내용은 별도 안내 예정)
- ┃• 중도금 대출을 원하는 수분양자는 계약체결 후 지정된 대출취급기관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중도금 대출을 원하는 수분양자는 중도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나 중도금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 한도 초과, 각 종 보증서 발급제한 등)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고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도,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은 사용승인일 이후에 받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 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음)
-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선납금액 중 약정별 납부기일이 지난 경우는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금 및 약정일 이전에 납부한 선납금액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고,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자 본인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 (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 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 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주민등록표등(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 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입주개시 전 특정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방문 및 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입주 시 관리주체가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관리비 선수금을 금원은 관리주체에서 정하고, 이에 따른 징수 및 사용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상기 공급금액은 사업주체의 자체심의 결과 주택형별, 층별, 향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불이익이 생길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 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 및 판매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 일부 주차공간의 경우 인접 구조물로 인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도면의 안목치수는 타일, 가구 등 마감재 설치 두께가 미반영된 수치로 입주 시 실제 측정 치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시계획인가 미완료 시 또는 준공 전 인허가청 요구사항 등으로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본 아파트의 명칭 및 상품개선 등은 사업진행 중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 지하층(주동·주차장)의 표기 등 역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분양홍보물 및 단지모형 등에 표현된 주동 및 부대시설의 형태, 옥상 옥탑부, 창호 형태, 측벽 디자인, 외부 색채, 외벽 로고 사인, 외벽 마감, 각종 시설물 등의 계획은 소비자 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 법규 현황,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른 시공성 개선, 상품 품질 및 디자인 개선, 시공사의 디자인 매뉴얼 변경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주택 공급계약서는「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시 분양계약자(매수자 혹은 수분양자)는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50% 부담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자가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가산세 등)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지 거래가격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납부방법
- 정부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doc-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 은행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발행 불가)
-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 기 바랍니다.

4 | 특별공급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 공 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공공)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 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혼인 전 이력 배제)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 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mark>혼인특례</mark> 는 본인 기준 1회 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mark>출산특례</mark>)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공공)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공급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니는 2024.03.23. 시청년 ·	무역중요에 단한 규칙」제33포의2에 떠나	구구는 6염시골표일에 붙는 구국에 대해 중국경국을 구 났으며, 중국경염 시 다음과 붙어 시니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빌	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 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 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된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통장

자격요건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m²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43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대구지방보훈청 보훈복지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중소기업 근로자 : 대구·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장애인 : 경상북도청 장애인복지과, 대구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43세대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고 령군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대구광역시에 거주 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대상자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고령군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거주자) ■ ②배점

wisi+i B	+ =	배점기준		ul-a	
배점항목	총배점	기준	점수	비고	
계	100				
		4명 이상	40		
미성년 자녀수(1)	40	3명	3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25		
		3명 이상	15		
영유아 자녀수(2)	15	2명	1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1명	5	차아시쳐지의 지계조스(베이지의 지계조스의 교회하면 디즈테지크 회전(의 이즈지디지고그의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AIFII 1 8(3)	J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무주택기간(4)	20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1년 이상 ~ 5년 미만	10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해당 시·도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경상북도 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거주기간(5)	15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	
11112(3)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 한함)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구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	본이나 주단	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 세대수의 23% 범위 : 103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고령군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신생아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1단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25%)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ALMOL OTHER T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3단계	(25%)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4근계	(1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단계	T G O H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고**령군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③지역: 해당지역 거주자(고령군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거주자)

■ 자녀기준

- 자녀는「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비고

당첨자 선정방법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09.05(금)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소득금액					
エコナモ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205,312원	~8,578,088원	~9,031,048원	~9,733,086원	~10,435,124원	~11,137,162원
우선공급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646,374원	~10,293,706원	~10,837,258원	~11,679,703원	~12,522,149원	~13,364,594원
	부부 중 한 명만	100% 하다	7,205,313원~	8,578,089원~	9,031,049원~	9,733,087원~	10,435,125원~	11,137,163원~
신생아일반공급,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10,087,437원	12,009,323원	12,643,467원	13,626,320원	14,609,174원	15,592,027원
일반공급	부부 모두	120% 초과	8,646,375원~	10,293,707원~	10,837,259원~	11,679,704원~	12,522,150원~	13,364,595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11,528,499원	13,724,941원	14,449,677원	15,572,938원	16,696,198원	17,819,459원
	부부 중 한 명만	140% 초과하나,	10.007.4209	12,000,2249	12 642 4609	12 626 2219	14 600 1759	15 502 02091
춰고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가액 충족	10,087,438원~	12,009,324원~	12,643,468원~	13,626,321원~	14,609,175원~	15,592,028원~
추첨공급	부부 모두	160% 초과하나,	11 520 500 91	12 724 0429	14 440 67091	4F F72 020 Pl	10.000.100.91	17.010.46091
	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O(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 - 강보험법 시행령 _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1 12		- - 7	- T		-	건축물	시가표준액 적용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토지	단, 아래 경우는 제외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자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쳐	용되고 있는 경우 H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4-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3세대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실 현재 고령군에 거주	하거나 경상북도,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	무주택자이어야 함								
FILALTI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족	주자 (고령군 거주자) -	· 기타지역 거주자(<mark>경상북도, 대구광역시</mark> 2	^식 주자)						
F1 +1 +1	■ ② 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	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	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	기재 오류에 의한 잘				
당첨자	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선정방법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I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0명	5	4명	25
	②부양가족수 2 2 2 2 4 3 4 4 5 4 5 4 5 7 8 7 8 7 8 8 8 9 8 9 8 9 8 9 8 9 8 8 9 8 9	35	1명	10	5명	30
	Ø T 6 71 ¬ T	33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17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③입주자저축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가입기간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718716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	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점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신	일을 기준으로 함			
			· · - 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	하		
				ä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	합저죽으로 전환한 경우	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	성자 및 그 배우자, 피-	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i>·</i>	산정		
비고			· · · · / / · · · · · · · · · · · · · ·			
-1						
	│■ 반60세 이상의 식계손·	속(끠부양사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낭		

4-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39세대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고 령군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대상자	※ (예외)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 <mark>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mark> 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m²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본 주택은 60m² 이하 주택형이 없으므로 1인 가구 중 단독세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불가함)
-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당첨자

선정방법

비고

내용 단계 소득구분 신생아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1단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15%) 신생아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2단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 우선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3단계 (35%)일반공급 4단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15%)혼인 중이거나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워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1인 가구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해당지역 거주자(고령군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거주자)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09.05(금)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소득금액					
エマイと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366,906원	~11,151,514원	~11,740,362원	~12,653,012원	~13,565,661원	~14,478,311원
신생아일반공급,		130% 초과	9,366,907원~	11,151,515원~	11,740,363원~	12,653,013원~	13,565,662원~	14,478,312원~
	일반공급		11,528,499원	13,724,941원	14,449,677원	15,572,938원	16,696,198원	17,819,459원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추첨공급	1인 가구	160% 이하	~11,528,499원	~13,724,941원	~14,449,677원	~15,572,938원	~16,696,198원	~17,819,459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 - 강보험법 시행령_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2연2 100마위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토지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5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고령군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 을 갖추어야 합니다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m²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m²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해당지역 거주자(고령군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m² 초과 85m² 이하	40%	60%
전용면적 85m² 초과	-	10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당첨자 선정방법

가점항목	가점	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①무주택기간	3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35		0명	5	4명	25
②부양가족수			1명	10	5명	30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_	,,,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③입주자저축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가입기간	17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Т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1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1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베구시	1년 미만	1	2년 이상	3			
ш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2) 후이고게즈며니/마20네 이저에 후이치 건요 후이시그의 회에 (사건모두기버드법 건축모대자드법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 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만30세 미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기존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③입주자저축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가입기간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③청약통장 가입	내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	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l 약 시 유의사항 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09:00~17:30

6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제3자 대리신청 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추가서류	위임시는 제출 생략)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배우자 포함)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09.23.(화) ~ 2025.10.02(목)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청약홈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 제공일시: 2025.09.23.(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문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구분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서류제출 방법 및 장소 계약체결 등별 공급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시: 2025.09.23.(화) □ 일시: 2025.09.27.(토) ~ 2025.09.29.(월) (10:00~16:00) □ 일시: 2025.10.04.(토) ~ 2025.10.06.(월) 3일간 1순위 (https://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472) (10:00~16:00) □ 장소: 견본주택 2순위 * 사용 가능한 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당첨자 외 입장 불가(동반 1인 가능) □ 장소: 견본주택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472)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472)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472)	■ 일	정 및 계약장소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일반 공급 2순위 		구분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서류제출 방법 및 장소	계약체결
	공급 일반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u>https://www.a</u> 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10:00~16:00) ■ 장소 : 견본주택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472) * 당첨자 외 입장 불가(동반 1인 가능)	(10:00~16:00) ■ 장소 : 견본주택

※ 당첨자 적격검수 제출 일정 기간 내 방문예약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서류 제출 일정 및 운영시간, 서류 제출 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개별통보 예정)

유의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 기한 내 미접수 시 계약포기로 간주하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기한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 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견본주택을 방문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 자격검증서류 제출 시 홈페이지(http://www.다산월드메르디앙센텀하이.com) 안내 예정이며, 자격검증서류 제출 일정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기간 내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입주자 서류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동·호수 배정 추첨참여 및 계약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모든 제출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9.05)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5년 동안 보관 후 지체없이 파기처리 합니다.
-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 제출서류(견본주택 방문 청약 신청자는 청약신청 시에 제출하며, 인터넷 청약 신청자는 당첨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 제출서류(견본주택 방문 청약 신청자는 청약신청 시에 제출하며, 인터넷 청약 신청자는 당첨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

구분	서류 필수	·유형 추가 (해당자)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특별공급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본인	■ 견본주택 방문청약 접수 시, 인터넷 청약(https://www.applyhome.co.kr)한 경우 생략 ■ 당사 견본주택 비치, 무주택 입증서류(무주택 서약서로 대체)
	0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등 ■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0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용, 계약자의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0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0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0		주민등록표초본(전체)	본인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하여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상세"로 발급
 공통서류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0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상세)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0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0	해외체류(단신부임)관련 증빙서류	본인 및 세대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8항에 의거 당첨자(청약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아래 표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 참조]
		0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장애인, 국가유공자 제외) ■ 견본주택 방문청약 접수 시, 인터넷 청약(https://www.applyhome.co.kr)한 경우 생략
		0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본인 또는 세대원	■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 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 단, 낙찰 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해당 ①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낙찰 증빙서류: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 ③ 해당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④ 채권자의 확인서류: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		0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기관추천 특별공급	0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해당기관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 해당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0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	본인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신청자 본인 점수산정 및 인적사항 기록

구분	서류 필수	추가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해당자)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하여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 산정 시)
		0		직계비속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0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 직계비속을 자녀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0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에 한함(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0	임신증명 및 출산 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0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0		자격요건확인서	본인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
시승ㅂㅂ	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신혼부부 특별공급	0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 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 입증서류) ● 아래 신혼부부특별공급 및 생애최초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고 ※ FAX 수신문서 등 복사본 불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구분	서류 필수	유형 추가 (해당자)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직계비속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 자녀 기준 "상세"로 발급
		0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에 한함(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0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0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발급기관)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등기열람/발급> 부동산> "부동산소유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결과)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아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고
		0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물	본인 및 세대원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출력물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0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및 재산세 납부내역	본인 및 세대원	■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제출
	0		가점산정기준표	본인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노부모 부양	0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 확인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3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부왕 특별공급		0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상세"로 발급

	서류	유형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0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상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0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0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비속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0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혼인 신고일, 자녀수, 과거1년 근로/사업소득세,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월평균 소득 확인)
	0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 ※ 아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납부 입증 증빙서류 참고하여 발급
	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생애최초	0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주민등록표등 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 입증서류) 아래 신혼부부특별공급 및 생애최초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고 ※ FAX 수신문서 등 복사본 불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특별공급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만 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0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등기열람/발급> 부동산> "부동산소유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결과)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아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고

	서류유형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물	본인 및 세대원	■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출력물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0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에 한함(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0	임신증명 및 출산 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0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0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재산세 납부내역	본인 및 세대원	■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제출	
		0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해당 주택	소유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미등기 주택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H저거		0	무허가건물확인서	해당 주택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주택임을 확인하는 공문	
부적격 · 통보를 받은자 ·		0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해당 주택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철거 및 멸실을 확인하는 공문	
근근시		0	기타 무주택자 증명 서류	해당 주택	■ 주택공시가격증명원, 실거래신고서, 미분양 주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서 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0	당첨사실 소명 서류	해당 주택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제3자	0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공급 신청 자(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아파트 서류접수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불가	
대리인 신청시	0		위임장	공급 신청 자(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추가사항	0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본 필수 선생되지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글 ㅜ	(해당자)					
		0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가점제		0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청약자		0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0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비속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_	0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0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0			본인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상세"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3년 이상 부양)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3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_		0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0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0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용, 계약자의 '본인 발급'인감증명서에 한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일반공급	0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f '상세'로 발급		
-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3년 이상 부양)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3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0		피부양 직계비속	■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서류유형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0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미혼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상세"로 발급	
	0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0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상세)	피부양 직계존비 속 (배우자 제외)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요양시설,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체류한 경우)인 경우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 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0	해외체류(단신부임)관련 증빙서류	본인 및 세대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8항에 의거 당첨자(청약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만) 국위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아래 표'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참조]	
		0	복무확인서	본인	■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 명시	
		0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해당 주택	■ 소유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미등기 주택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부적격		0	무허가건물확인서	해당 주택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주택임을 확인하는 공문	
통보		0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해당 주택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철거 및 멸실을 확인하는 공문	
받은자		0	기타 무주택자 증명 서류	해당 주택	■ 주택공시가격증명원, 실거래신고서, 미분양 주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서 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0	당첨사실 소명 서류	해당 주택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제3자	0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아파트 서류접수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불가	
대리인 신청시	0		위임장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추가사항	0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 '단신부임' 청약신청 및 당첨자는 상기 공통서류 외 추가 제출)

구분	서류 필수	유형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파견 및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안됨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0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상세)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부터~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0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배우자 및 세대원전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공급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 연간 183일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0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속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자료	발급처
근 로 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팩스불가)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 해당직장 ■ 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팩스불가)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팩스불가)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 직인날인)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팩스불가) ② 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는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 해당직장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자료	발급처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영 업	법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 전년도 재무재표 원본(직인 날인) ④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팩스불가) ⑤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해당직장세무서등기소
	자 ①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팩스불가) ②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해당직장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계약기간 및 총 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 ①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 국민연금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전년도 1월 1일 ~ 입주자모집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견본주택에 비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 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②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견본주택세무서
(근로사중 출산유가 및 육아휴직세대 한함)		① 출산전·후 휴가 급여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기간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 거주지 관할구역 고용센터 ■ 해당직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규칙 제2조제2호의3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별표3) 참고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구분	구분	제출서류	발급기관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입증서류	자영업자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본)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합니다. ※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포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공단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 원본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납세사실증명(종합소득금액 증명 제출자에 한함)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④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 증명	■ 해당직장 ■ 세무서

-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도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결정세액이 환급 또는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해당년도 모두)하여야 합니다.
- 소득관련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분에 한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대상자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들 포함) 전원의 자산 입증서류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필수	① 부동산 소유 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등기부등본 (*부동산 소유 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	①,② 등기소(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포함)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추가 (해당자)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서울시 : '서울시ETAX > ETAX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④ 농지대장, 축산업 허가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농지법」 및「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② 해당 행정복지센터 ③ 서울시이택스, 위택스 ④ 해당 행정복지센터, 해당 축산과, 토지이음
'부동산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② 해당 행정복지센터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상기 자산입증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입증서류를 포함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1 7±11*1	1 4666 × 6646 (14664 66 114) 41232446 × 41332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다.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교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가장제의 보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등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보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밝아 사람기에 이나 이를 필실시키가나 슬제 어떤 다른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이고 있는 경우(단, 단육산인공) 이하일 경우(단, 단육산인공) 이하일 경우(단, 단육산인공) 이하일 경우(단, 단육산인공원은 1억유산인공인) 이하일 경우 보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등자급이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구적업 시행령」제3조제1항제 호및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1개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원인 기점을 및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조제2호 및 제3조제3화제3조 때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이 대육원 시점을 제10조제 함께 또는 무단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이 대육원인 시점을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조제 1항제2호 및 제3조제 1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m²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제53조제9호나목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계약기간 및 계약금 납부안내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계좌로 1차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 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일정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5.10.04.(토) ~ 2025.10.06.(월) 10:00 ~ 16:00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472
O 급시 계급 세글	2023.10.04.(主) ~ 2023.10.00.(宣) 10.00 ~ 10.00	다산 월드메르디앙 센텀하이 견본주택

- ※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세대가 있을 경우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분양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 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 은 예비업주자에게 공급함)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합니다.
-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동·호수 추첨 및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 개별안내 예정입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국민은행	824037-04-008705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입금시 동-호수, 계약자명 필히 기재요망

-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상기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 지정 계약기간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지정 계약기간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예시 101동 1902 호 계약자 → '1011902홍길동' / 103동 803호 계약자 → '1030803홍길동')

■ 계약 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제출유형 추가(해당자)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필수 해당자
	0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0		자격검증서류	본인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기간에 제출완료자는 제외)
		0	추가 개별통지서류	본인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0		인감증명서	본인	- 용도에「아파트계약용」으로직접 기재, 본인발급에 한함. 본인계약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대체 가능
본인계약시	0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도장과 일치 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계약시서명으로 대체
	0		계약금입금증	본인	- 견본주택에서는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0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의거하여 제출을 의무화 함
	0		전자수입인지 납부증명서	본인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및 시중은행에서 구매
부적격 당첨 통보자		0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0	당첨사실 소명서류	해당기관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서류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아래서류 추가		!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아래서류 추가 제출			
	0		위임장	계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제3자	0		인감증명서	계약자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계약 불가)
대리인 계약시	0		인감도장	계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에는 생략
'"''	0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0		인장	대리인	- 서명가능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9.05)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 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본인의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 인이 [서명]을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대리접수 불가)
-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대리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외국국적동포 또는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조건 및 유의사항

- 본 아파트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 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 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2022.12.29.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 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을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되며,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부정 당첨자로 관리가 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 야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고령군 및 경상북도 또는 대구광역시 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민등록 위장 전입자가 본 아파트에 공급 신청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관련법규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속도/탑승위치 등)등은 최종 사업계획(변경포함)승인도서 및 준공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시공사 은성산업(주), 은성건설(주)는 시행위탁자 (주)도시의 꿈,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및 "사업약정서"상의 책임준공 등 시공 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며, 본 사업의 분양과 관련된 제반 업무 중 분양광고, 계약자 관리, 분양대금 관리는 시공사 업무범위가 아님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유니트 및 단지내 모형 및 홍보물 일체(POP, 이미지 외)는 소비자(분양자 외)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실제 설치.시공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시 당해 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 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홍보물상의 조감도 및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및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구역, 단지 내 명칭 및 동·호수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공급계약서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주택의 공급계약)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02.28.시행)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주체에서 일괄 신고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 하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 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1.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 (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관련법에 따름.

■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 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아래 계약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 취소,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당첨 제한 등)됨 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기간 내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각 순위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중당첨 및 부적격 당첨자의 계약시 아파트 공급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는 정해진 기간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7일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 금융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발코니 확장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한 중도금 대출시 중도금 무이자 조건이며, 중도금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 까지 사업주체가 계약자를 대신하여 납부하고,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기로 합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 내 미납시에는 연체료 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우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자후불제 조건에 대한 요구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할 수 없습니다.
- 대출금융기관과의 중도금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금융기관에 중도금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시 사업주체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분양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 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 약정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 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을 직접 납부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행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자가 대납하던 중도금대출 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안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은행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 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은행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율 및 연체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 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일 : 2026년 07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 예정)

- 2021.02.02.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통보하고,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1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날을 계약자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지정기간은 최소 45일이상 제공될 예정이며, 실제 입주일이 입주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된 중도금과 잔금을 실제 입주지정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 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암반발견,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 가 배상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관한 사항

-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합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점검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경로당,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어린이놀이터 등

※ 시설내 기구 및 집기류, 가구, 도서 등은 실제 시공시 수량 및 종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리 및 운영은 입주자의 부담으로 진행 예정

■ 하자담보책임

- **하자담보책임**은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 조에 의거 적용 됩니다.
- 하자판정 기준도면은 준공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발코니 확장, 추가선택품목 계약

9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 (단위 : 원, VAT포함)

약식표기	7 7 7 0	계약금(10%)	잔금(90%)	비고	
약작표기	공급금액	계약시	입주시	미포	
74A	13,200,000	1,320,000	11,880,000		
74B	13,200,000	1,320,000	11,880,000		
76	14,300,000	1,430,000	12,870,000		
84A	15,400,000	1,540,000	13,860,000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홍보물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	
84B	15,400,000	1,540,000	13,860,000		
103 펜트	18,700,000	1,870,000	16,830,000		
115 펜트	20,900,000	2,090,000	18,810,000		
121A 펜트	22,000,000	2,200,000	19,800,000		
121B 펜트	22,000,000	2,200,000	19,800,000		
121C 펜트	22,000,000	2,200,000	19,800,000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공사비	국민은행	824037-04-008693	한국투자부동산신탁㈜	

- ※ 지정된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계약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 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예시 101동 1902호 계약자 → '1011902홍길동' / 103동 803호 계약자 → '1030803홍길동')

■ 발코니 확장시 유의사항

•「건축법시행령」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은 세대별로

계약하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공동주택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확장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시 진행할 예정이며,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와 분양대금 납부계좌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일부 침실, 거실, 주방 및 발코니가 협소하여 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며, 평면구성 및 제공품목이 변경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고 실별, 위치별로 선택시공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서비스면적 확보 및 발코니 확장을 고려한 평면설계로 통행이 어려운 폭의 발코니 구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관련세금(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확장 시 또는 유상옵션 시 제공되는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의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 확장위치 및 마감재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달로그 또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 시 발코니 조명은 설치되지 않으며 각 실의 조명이 실 중심쪽으로 이동하여 설치됩니다.
- 발코니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제조사, 브랜드, 하드웨어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색 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발코니의 면적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출되는 면적으로 실사용 면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빌트인가전 및 일부 마감재가 확장 또는 비확장형 여부에 따라 상이하오니 사전에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가구류는 확장 또는 비확장형 여부에 따라 설치 위치, 수량 및 디자인이 상이하오니 사전에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 시 제공되는 발코니 외부샤시는 타입, 창호 위치에 따라 규격이 상이하므로 견본주택 및 비치된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선택 시 확장부위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주기적인 실내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환기 부주의로 인한 결로발생은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하향식피난구 또는 대피공간의 구조 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 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고,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는 각 세대의 가스배관 및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시공되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잡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ㅐ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일부배관이 노출시공되어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가 설치된 공간의 출입문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발코니 확장 창호는 성능 및 안전 개선 등으로 창호의 형태, 형식,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발코니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확장되지 않은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발코니 샤시 설치 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확장되지 않은 발코니 및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된 내용은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되며,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는 비확장 발코니를 제외하고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별도의 배수설비 및 수전은 시공하지 않고, 배수구 위치 및 배수/우수 입상관 위치는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고,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정에 덕트 및 연도,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게 이 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부세대가 발코니 미확장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정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벽·천장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한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나 결로가 발생할 수 있고, 일부 벽체·천장 마감재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발코니 입면 변화 및 창호 크기 및 위치 등의 차이로 서비스 면적과 채광 및 환기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합니다.

■ 추가 선택 품목 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 일정

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대금	신한은행	140-013-867408	은성산업(주)

납부일정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시		

- ※ 지정된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대금(계약금,잔금) 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상기 계좌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 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 습니다.
-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함. 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 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
-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 습니다.(예시 – 101동 1902호 계약자 → '1011902홍길동' / 103동 803호 계약자 → '1030803홍길동')

■ 추가 선택 품목(유상 선택옵션)

1-1. 인테리어 추가선택 품목

(단위: 원, VAT포함)

옵션명	주택형 설치위치 및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급신경 	수택형 설치위치 및 품목 	계약시		입주시		
기시 /ᄌᄡ	74A,74B	거실/주방 바닥 포세린타일	1,320,000	132,000	1,188,000	
게실/주방 바닥타일	76	거실/주방 바닥 포세린타일	1,430,000	143,000	1,287,000	
	84A,84B	거실/주방 바닥 포세린타일	1,540,000	154,000	1,386,000	
거실 아트월	74A,74B,76	거실 아트월 대형 세라믹타일 시공	3,850,000	385,000	3,465,000	

업그레이트	84A,84B	거실 아트월 대형 세라믹타일 시공	4,070,000	407,000	3,663,000
기사 기저주면	74A,74B	거실 우물천정 직/간접조명 시공	3,630,000	363,000	3,267,000
거실 간접조명	76	거실 우물천정 직/간접조명 시공	3,740,000	374,000	3,366,000
	84A,84B	거실 우물천정 직/간접조명 시공	4,400,000	440,000	3,960,000
	74A,74B,76	주방 벽/상판 세라믹타일+와이드 사각싱크볼	6,930,000	693,000	6,237,000
주방 세라믹타일	84A	주방 벽/상판 세라믹타일+와이드 사각싱크볼	9,240,000	924,000	8,316,000
	84B	주방 벽/상판 세라믹타일+와이드 사각싱크볼	7,700,000	770,000	6,930,000
현관 중문	74A,74B,84B,103,1 15,121A,121B,121C	현관 3연중문	1,650,000	165,000	1,485,000
	76, 84A	현관 스윙중문	1,650,000	165,000	1,485,000
	74A, 76	주방플랩장+주방 벽/상판 세라믹타일+와이드 사각싱크볼 +홈카페장+터닝도어 시트판넬	11,330,000	1,133,000	10,197,000
주방가구	74B, 84B	주방플랩장+주방 벽/상판 세라믹타일+사각싱크볼	9,130,000	913,000	8,217,000
	84A	주방플랩장+주방 벽/상판 세라믹타일+와이드 사각싱크볼 +홈카페장+터닝도어 시트판넬	16,610,000	1,661,000	14,949,000
	74A	주방 우물천정+흡음천정재+매립등+팬던트등 변경	1,210,000	121,000	1,089,000
주방 천정디자인	76	주방 우물천정+흡음천정재+매립등+팬던트등 변경	1,320,000	132,000	1,188,000
	84A	주방 우물천정+흡음천정재+매립등+팬던트등 변경	1,430,000	143,000	1,287,000
복도디자인	74B, 84B	복도 시트판넬	880,000	88,000	792,000
	74A, 74B	안방 붙박이장	3,520,000	352,000	3,168,000
안방 붙박이장	76	안방 붙박이장	3,630,000	363,000	3,267,000
	84A, 84B	안방 붙박이장	3,740,000	374,000	3,366,000

1-2. 빌트인 가전 추가선택 품목

(단위 : 원, VAT포함)

옵션명	주택형	설치위치 및 품목		계약금(10%)	잔금(90%)	비고
860	T 70			계약시	입주시	
	744 740 76 044 040	거실+침실1(안방) [2개소]	4,730,000	473,000	4,257,000	
시스템에어컨	74A,74B,76,84A,84B	거실+침실1(안방)+침실2+침실3 [4개소]	7,810,000	781,000	7,029,000	
시드립에어진 	103,115,121A,	거실+주방+침실1(안방) [3개소]	6,820,000	682,000	6,138,000	
	121B,121C	거실+주방+침실1(안방)+침실2+침실3 [5개소]	10,230,000	1,023,000	9,207,000	
BESPOKE 냉장고	74A,76	BESPOKE 냉장고+냉동고+키큰장	3,190,000	319,000	2,871,000	
BESPOKE 29.27	74B,84A,84B	BESPOKE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키큰장	5,060,000	506,000	4,554,000	
의류관리기	74A	의류관리기+의류관리기장+복도FIX판넬	2,200,000	220,000	1,980,000	
	76	의류관리기+의류관리기장+복도FIX판넬	2,420,000	242,000	2,178,000	

	84A	의류관리기+의류관리기장+복도FIX판넬	2,530,000	253,000	2,277,000	
식기세척기	74A,74B,76, 84A, 84B	식기세척기	1,100,000	110,000	990,000	
인덕션	74A,74B,76, 84A,84B	인덕션	770,000	77,000	693,000	

2. 추가선택 품목 유의사항

(1) 공통 유의사항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입니다.
- 본 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확장 계약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시점 이후 시공을 위하여 소요자재를 선 발주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합니다.(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최종 일정은 분양계약 시 또는 별도 통보 예정임)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계약금 10%가 위약금으로 시공사에 귀속되며,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착수일(공사업체 및 자재선정 등의 업무 포함) 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소요자재를 선 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계약 이후 계약의 변경 및 해제시 원상복구, 변경 공사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계약은 본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계약 대금에 대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는 소비자 상대업종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 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 카탈로그에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조건(납부금액 또는 납부일정, 계약체결 일정 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으로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옵션계약도 자동으로 해제 또는 취소됩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 계약과는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추가선택품목은 해당 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시공사 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공급계약 체결시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와 분양대금 납부계좌가 상이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에서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된 제품의 제조 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선택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빌트인 가전 및 붙박이 가구 선택 시 설치부위 후면, 천장 및 바닥은 마감재 시공범위에서 제외되며, 판매가 산정시 해당하는 설치비용은 가감처리된 금액입니다.
- 인조대리석, 각종 타일 등의 패턴, 색상, 줄눈 나누기 및 간격은 본 공사 시 다소 다를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견본주택 시공내용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관련세금(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품목별 계약금이 상이하며, 계약 전 반드시 계약금 및 계약조건, 납부일정, 납부계좌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여건에 맞게 설치되는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선택하시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도면, 홍보물 등의 가구 및 가구표현 등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 및 계약 시 선택한 사항이 우선하므로 반드시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 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조명, 마감, 소방설비, 환기, 스위치 등의 위치 및 수량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가전제품 옵션은 세대 내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 등급은 검사기준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품질보증기간은 가전제품류 선택시 제공되는 품질보증서를 따릅니다.
- 동일 타입이라 하더라도 좌우대칭형 세대의 경우 옵션 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거실/주방 바닥타일 선택시 유의 사항

- 옵션 미선택시 기본형은 침실과 동일한 강마루로 시공됩니다.
- 설치 나누기 및 배치, 패턴과 색상 등은 본 공사 시 견본주택 시공내용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타입별 평면 컨디션에 따라 옵션 바닥 포세린타일 시공부위 및 면적은 상이하오니,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옵션 선택시 가구 설치부위 바닥은 시공범위에서 제외되며, 판매가 산정시 해당비용은 가감처리된 금액이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옵션 선택시 바닥타일과 강마루 경계에 황동줄눈이 설치되며, 마감재의 특성상 단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거실 아트월 업그레이드 선택시 유의 사항

- 옵션 미선택시 아트월구간 벽면은 포세린타일로 시공됩니다.
- 설치 나누기 및 배치, 패턴과 색상 등은 본 공사 시 견본주택 시공내용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타입별 평면 컨디션에 따라 옵션 바닥 포세린타일 시공부위 및 면적은 상이하오니,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거실 간접조명 선택시 유의 사항

- 옵션 선택시 기본 거실등은 설치되지 않으며, 판매가 산정시 해당비용은 가감처리된 금액이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품의 설치구간, 설치 위치와 조명의 색온도, 회로구성 등은 계약자가 임의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제품 성능 개선과 관련 법규 개정 등으로 제품 사양 변경 시 모델명, 등기구 용량 및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제품 단종시 동등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 시공됩니다.

(5) 주방 세라믹타일 선택시 유의 사항

- 옵션 미선택시 주방상판은 인조대리석(MMA), 주방벽체는 타일(도기질)로 시공되며, 일반 싱크볼이 제공됩니다.
- 설치 나누기 및 배치, 패턴과 색상 등은 본 공사 시 견본주택 시공내용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타입별 평면 컨디션에 따라 타일의 나누기 및 설치구간, 설치면적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품의 설치위치 및 구성은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6) 현관 중문 선택시 유의 사항

- 현관 중문은 타입별 평면 컨디션에 맞추어 형태, 면적, 열림방식 등이 상이하오니, 계약 전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 중문은 내부창호로써 기밀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옵션 선택시 중문 설치를 위하여 일부 건식 벽체가 삭제되거나, 현관 신발장 길이 및 디딤판 폭이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옵션 미선택시 벽면은 기본 도배지로 시공됩니다.
- 현관 중문 하부레벨은 바닥(마루, 디딤석)과 단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제품의 상하부 레일, 힌지, 프레임 및 유리색상, 손잡이 디테일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분양자가 임의로 중문 설치시 고정불량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수분양자가 임의로 중문 설치시 프레임 및 레일 설치로 추가적인 마감공사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는 수분양자의 부담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옵션선택시 상하부의 레일과 상부 및 측면의 문들 및 프레임이 노출시공 됩니다.

(7) 주방 가구 선택시 유의 사항

- 옵션 미선택시 홈카페장은 제공되지 않으며, 일반 주방 상부장이 설치되고, 터닝도어쪽 벽면은 기본 도배지로 시공됩니다.
- 옵션 미선택시 주방상판은 인조대리석(MMA), 주방벽체는 타일(도기질)로 시공되며, 일반 싱크볼이 제공됩니다.
- 플랩장의 유리 및 프레임 색상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세라믹 타일의 설치 나누기 및 배치, 패턴과 색상 등은 본 공사 시 견본주택 시공내용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평면 컨디션에 따라 타입별로 터닝도어 시트판넬 설치면적과 구간이 상이하며, 홈카페장 설치가 불가능한 타입이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입별 평면 컨디션에 따라 타일의 나누기 및 설치구간, 설치면적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품의 설치위치 및 구성은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가구와 시트판넬 설치부위 후면 및 바닥은 마감재 시공범위에서 제외되며, 판매가 산정시 해당하는 설치비용은 가감처리된 금액이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주방 천정디자인 선택시 유의 사항
- 옵션 미선택시 우물천정과 매립등, 디자인식탁등(팬던트등)은 시공되지 않으며, 기본 식탁등(팬던트등)이 설치되고 평천정에 천정지로 시공됩니다.
- 평면 컨디션에 따라 타입별로 우물천정의 규격과 흡음천정재의 설치구간이 상이하며 옵션적용이 불가능한 타입이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품의 설치구간, 구성, 설치위치와 조명의 색온도, 회로구성 등은 계약자가 임의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제품 성능 개선과 관련 법규 개정 등으로 제품 사양 변경 시 모델명, 등기구 용량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제품 단종시 동등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 시공됩니다.
- 흡음천정재의 패턴과 색상 등은 본 공사 시 견본주택 시공내용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9) 복도 디자인 선택시 유의 사항

- 옵션 미선택시 벽면은 기본 도배지로 시공됩니다.
- 시트판넬 설치부위 후면 및 바닥은 마감재 시공범위에서 제외되며, 판매가 산정시 해당하는 설치비용은 가감처리된 금액이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평면 컨디션에 따라 시트판넬 설치면적과 구간이 상이하며, 의류관리기 선택시 제공되는 세대가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설치 나누기 및 배치, 패턴과 색상 등은 본 공사 시 견본주택 시공내용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10) 안방 붙박이장 선택시 유의 사항

- 옵션 미선택시 벽면은 기본 도배지로 시공됩니다.
- 평면 컨디션에 따라 타입별로 붙박이장의 설치위치, 규격, 가구 구성 및 액세서리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붙받이장 뒷면에 전기콘센트 및 통신, TV수구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전열기구 및 TV사용이 불가능한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도어 및 바디색상, 상하부레일, 힌지, 프레임, 손잡이 디테일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구 설치부위 후면 및 바닥은 마감재 시공범위에서 제외되며, 판매가 산정시 해당하는 설치비용은 가감처리된 금액이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유의 사항

- 시스템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냉매 배관 및 배수관이 천장 속에 설치되며,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 등을 추가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시 실외기가 설치되는 구간에 노출배관이 설치되어 미관을 해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 제공)
-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당초 계약모델을 공급함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등 이상의 타 모델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안방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냉매배관만 설치되며, 추후 실내외기 설치 및 연결공사는 입주자 부담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선택시에도 전세대 내 거실/안방의 냉매 매립배관 및 콘센트가 설치되며, 판매가 산정시 포함된 금액이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사용으로 배관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배수 드레인배관에서 배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천장형 에어컨 냉매배관 및 드레인, 전원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 부담으로 에어컨 관련 일체의 공사를 별도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 실외기의 성능향상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발코니 턱 높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입별로 에어컨 실내기 및 실외기 설치위치와 실내기 규격이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의 제품 또는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 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분양 카달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빌트인 가전 선택시 유의 사항

• 제품 성능 개선과 관련 법규 개정 등으로 제품 사양 변경 시 모델명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품 단종 시 동등사양 이상의 동사 또는 타사 제품으로 납품 시공됩니다.
- 빌트인 가전제품의 설치위치 및 구성은 타입별 평면 컨디션에 따라 지정되어 있으며, 지정된 항목의 구성 및 위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설치제품은 견본주택에 기 설치된 제품으로 공사일정에 맞춰 생산된 제품이 설치됩니다.
- 냉장고, 의류관리기, 식기세척기의 도어색상과 인덕션의 색상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 평면 컨디션에 따라 타입별로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의류관리기 도어의 개폐방향이 지정되어 있으며 변경은 불가합니다.
- 평면 컨디션에 따라 타입별로 냉장고 옵션의 구성이 상이하오니, 계약 전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비스포크 냉장고 옵션 미선택시 일반 프리스탠딩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 배치 가능한 공간이 제공되며, 일부 타입은 냉장고 배치공간만 제공되오니 계약 전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의류관리기 미선택시 팬트리 도어 및 팬트리 시스템 가구가 제공되며, 시트판넬구간과 팬트리 내부벽면은 기본 도배지로 시공됩니다.
- 세대 타입에 따라 의류관리기 미선택시 팬트리 룸 내부에는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아 의류관리기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타입에 따라 의류관리기 옵션 선택이 불가한 세대가 있으니 계약전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의류관리기 옵션 선택시 세대 타입별 평면컨디션에 따라 의류관리기장의 규격 및 구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시트판넬 설치구간이 상이하오니, 계약 전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빌트인 가전옵션에 포함된 가구 설치부위 후면 및 바닥은 마감재 시공범위에서 제외되며, 판매가 산정시 해당하는 설치비용은 가감처리된 금액이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식기세척기 미선택시 수납이 가능한 일반 주방 하부장이 제공됩니다.
- 식기세척기 선택시 식기세척기의 후면 및 바닥은 마감재 시공범위에서 제외되며, 판매가 산정시 해당하는 설치비용은 가감처리된 금액이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수분양자가 임의로 식기세척기 설치시 급수 및 배수관 연결불량으로 누수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인덕션 미선택시 3구 가스쿡탑이 설치되고 주방에 가스배관이 노출되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덕션 미선택시 가스쿡탑 설치면에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콘센트 전기용량이 부족하여 인덕션으로 변경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및 단지 내외부 여건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공통사항

10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하였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실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당첨자로 관리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 공급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 공급 세대수의 5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는 특별공급 유형별, 일반공급 순위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및 고발조치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 등이 공제되오니 관련 조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서면(주민등록표등본 포함)으로 즉시 사업주체측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미이행으로 발생되는 각종 고지 및 우편송달 미확인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시 현재 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의 보장이나 변경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1·2순위)으로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 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 관리 되며, 특별공급 당첨자는 향후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고, 1순위 청약통장 사용 당첨자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면적은 소수점 4째자리까지 표현되었으며,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의 합과는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첨 2째자리로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아파트)의 주거공용면적(계단실 및 코어) 및 기타 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 등)은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는 공동주택(아파트), 근린생활시설 간 대지경계(구획)가 없는 공유 토지이므로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및 최종 측량성과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시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을 하지 아니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 분양계약 관련 사항(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시설, 조망권, 주변개발여건, 유해시설 현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각종 홍보물과 인쇄물(카다로그 등) 및 분양 홈페이지상에 표시된 조감도, 투시도, 각종 이미지,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건축물, 조경계획, 식재, 시설물, 포장계획, 주변현황, 부지의 고저차 등), 공급간지, 기타 홍보물에 사용된 이미지, 일러스트(그림)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마케팅을 위하여 제작된 약도 및 지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제작물로 청약 예정자 및 계약 예정자는 필히 현장 및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태업 및 파업,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사업주체의 귀책사유 없이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입주지연 보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공급현황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실입주일이 만료일보다 앞서는 경우 실입주일)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전기료, 가스비 등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인 동·호수 지정 시 동일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아트월과 쇼파 설치 위치가 좌우 대칭되어 외부 조망이 달라질 수 있음)이 있을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 조경 공간(포장패턴, 식재, 놀이터를 포함한 시설물 등),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비상차량 동선 등)등은 인허가 관청 협의나 공사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평면, 입면,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계약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후 인허가 변경 시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협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아파트 단지명, 동번호, 외벽로고 등의 위치, 형태, 재질 등

공통사항

-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어린이놀이터, 옥외 주민공동시설, 휴게시설 및 맘스스테이션, 문주,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한전 전주, 통신 전주(단지의 주출입구 문주 앞에 시공될 수 있으며, 위치는 변동될 수 있음, 전력공급, 통신공급을 위해 설치됨), 포장, D.A(환기구), 외부계단, 비상차량동선, 소방전용구역, 주차구역, 단지 레벨차에 따른 출입구 위치 및 조경 등의 디자인, 위치, 개소 - 기타 주택법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계획승인 변경 및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사업계획승인 변경에 대해서는 주택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입주예정자에게 통보 예정임) • 입주 예정 주택이 동간거리로 인해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단지 내(부대복리시설, 지상돌출물, 지상 쓰레기 관련시설, 단지 내 도로 등) 및 단지 주변 시설물, 단지 외부 도로 등에 의한 사항은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분양 후 단지 주변의 개발 및 현장 여건, 인허가 관청의 협의 등에 따라 주변시설이 변경이 될 수 있으며, 인허가 관청 협의에 따라 목재형 방음벽으로 반영될 경우, 저층부 세대의 조망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 도서(사업계획변경승인 포함)에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재 및 부대편의시설, 단지 조경(수목, 수공간 및 시설물), 커뮤니티시설! 내부 운동기구 및 가구 등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입주 후, 본 사업부지와 인접한 도로, 건축물 및 시설물, 공동주택 등으로 인해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주변 개발계획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장 내 도시가스는 대성에너지(주)를 통하여 공급 예정입니다. • 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후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와 "㈜도시의꿈"간에 신탁계약이 종료(신탁목적의 달성, 신탁기간의 만료 등 신탁계약에서 정한 종료사유의 발생, 신탁계약의 해지 등을 의미함)되는 시점 또는 분양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의 명의로 이전된 시점 중 선도래 시점에 본 건축물에 대한 분양계약 관리와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는 분양계약의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도시의꿈"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 수분양자의 원활한 입주 및 하자보수를 위하여 주차장,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PIT일부 등 공용부에 입주지원센터 및 CS사무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제공품목, 유상옵션 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유상옵션 품목(설치사항, 규격), 견본주택의 연출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가전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커튼, 침대, 소파, 책상, 식탁, 전시조명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세탁기, TV 등),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으며(분양가 미포함),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계약 및 입주 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승인 시 제출하는 VR 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기본 마감재 이외에 유상옵션 품목과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용품이 포함된 VR 동영상이므로 제공품목은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인쇄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여건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CG, 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상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배관, 배선 등과 출입문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 가구(커튼, 침대, 소파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디스플레이용 조명,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 세내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 및 시공상의 여건 등으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세대내부 • 견본주택 및 단지 내에 적용되는 모든 자재 및 제품은 시공시기의 생산여건에 따라 자재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 개발 시에 한해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드레스룸, 침실 붙박이장, 선반가구,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본주택 건립 타입(84A) 외 미건립 타입(74A, 74B, 76, 103, 115, 121A, 121B, 121C)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이 견본주택 건립 타입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별도 안내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상 선택형 타입의 경우 최초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타입으로 시공이 되며 이후에는 배선, 배관 등 관련 설비공사에 따라 선택 변경이 불가합니다.
- 선택형 타입에 따라 공간의 크기가 변경될 수 있으니 별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외부창호의 제조사, 크기 및 두께, 재질, 색상, 디자인, 하드웨어, 유리사양, 개폐방향, 설치위치, 난간대, 손잡이 등은 구조 검토 결과 또는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프레임 및 유리)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카달로그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잠금장치사양, 형태, 날개 벽체 길이 등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금속도어(현관 방화문, 실외기실 도어)의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가구(파우더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선반가구, 욕실장 등)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천장, 벽체, 바닥)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욕실장 후면 타일 미시공, 파우더장/붙박이장/신발장 및 주방가구 천장/후면/측면 마감재 미시공 등)
- 단위세대 마감재 내용은 주택형별, 확장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우물천장의 크기 및 위치, 커튼박스의 길이, 폭, 깊이는 천장배관 등 본 시공시의 공사여건에 따라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에 시공된 타일의 무늬는 자재생산에 따라 무늬가 바뀔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의 수납공간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고, 욕실 도어 계폐시 (욕실화)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해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재는 주택형별에 따라 재질, 색상, 패턴, 크기 및 길이(가구 포함), 형태, 공간별 적용 아이템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모형, 카달로그에 반영된 평면 등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승인 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합니다.
- 욕조 설치면에는 타일이 미시공되고 타일 나누기가 변경될 수 있고, 배수구는 욕실 내에 1개소만 설치됩니다.
-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장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 고정형 가구 하부(난방 포함) 및 후면, 천장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 하부(난방 포함) 및 천장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세대에 적용된 타일의 경우, 동일한 제품이나 본 공사시 견본주택과 달리 패턴(세라믹 박판 패널은 자재 특성상 세대별 패턴이 상이함), 색상, 나누기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타일 마감벽체의 모서리에는 코너비드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내외부에 천연자재가 적용되는 경우,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합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마감자재 중 사업주체와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인 거실 아트월(주방 상판 및 벽체, 바닥 타일 포함) 타일의 패턴이 규칙적이지 않고 불규칙하게 설치되며 색상, 줄눈 나누기 및 간격이 다소 다를 수 있고, 시공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목창호, 시트패널(유상 옵션) 등의 고정을 위해 타카자국이 보일 수 있으며, 시공 디테일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욕실장 및 샤워부스의 디자인 및 디테일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 디테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각 실 안목치수는 발코니 확장형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발코니 비확장 및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다소 축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위생기구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마감 치수 및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입주자)는 본 계약 외 발코니 확장부위에 개인적으로 설치한 바닥단열 및 마감재, 샤시, 실외기실 루버 등의 제반 하자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마감재 및 방수 등)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단위세대 실별 실사이즈는 마감, 단열재두께의 차이 등으로 도면과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가구(장롱, 붙박이장 등) 및 가전류 등 집기류 설치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고,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일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은 매입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출조명은 연출을 위한 조명으로 본 공사에 적용되지 않는 품목입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일정기간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포함 품목(분양승인 신청서류 기준)과 전시품(조명, 가구, 전시 가전, 그림, 장식물, 각종 소품 등)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며,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분양승인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 모형내 설치되는 조명(수목투사등 등)은 모형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설치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위해 제작된 것으로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아 본 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가스 정압기, 태양광발전설비, 근린생활시설 옥상 조경, 실외기 위치 등은 본 공사 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세대 모형도 실제 마감재 칼라와 다른 모노톤에 기본 확장형으로 제작된 것으로 본 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녹지) 등의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 등은 현장 실제 시공 시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으며, 포장구간의 면적, 패턴, 색상, 고저차, 레벨 등은 각종 인허가, 현장 여건에 맞는 시공방법의 적용으로 모형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지에 식재되는 나무의 종류 및 배치는 모형 및 분양홍보물과 다를 수 있으며, 놀이시설물을 포함한 단지 내 시설물의 디자인과 배치는 모형 및 분양홍보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진입로 및 주변여건은 모형 및 CG 등 분양홍보물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견본주택 및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진입로(중로3-8)의 세부 시공사항은 실제 시공 시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의 경계 및 선형, 옹벽의 형태 및 색상 등이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시설물(공용 홀 및 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및 탑승위치 등)은 최종 사업계획승인 도서(공사 중 사업계획승인 변경도서 포함)에 준합니다.
-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부에 설치된 전시조명, 인테리어 각종 소품가구(커튼, 블라인드, 침구류, 카펫, 책상 및 의자, 식탁 및 의자, 소파 및 테이블, 화장대 의자 등 포함), 백 패널 및 장식물, 그림, 디스플레이 가전제품(세탁기, 건조기, 밥솥, 다용도실 인덕션, 토스터, 커피머신, 의류관리기 등),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소화기, 시각경보장치는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이며, 본 공사 시 설계 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거하여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 배선기구류, 월패드, 부부욕실, 주방TV, 온도조절기, 전열교환기스위치, 일괄소등스위치, 스피커폰 등은 성능, 디자인 및 기능 개선을 위해 제품 사양이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고 노출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미건립된 타입의 조명기구는 타입의 형태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른 조명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개소, 형태, 색상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단위세대 내 설치된 시스템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냉난방겸용 제품으로 본 공사 시 냉방전용(난방불가) 시스템에어컨이 유상옵션으로 제공되며, 장비사양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오수 배관의 위치, 점검구, 스프링클러, 선홈통과 수전의 위치, 온도조절기, 바닥배수구, 수전류 등의 제품 사양 및 위치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 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 동영상으로 사이버 견본주택 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에 비치된(필요시 방문하여 확인)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선택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과 전시용 조명, 설비 등은 부속배선·배관을 포함하여 시공·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입구는 전시용 프레임이 설치 되었으며, 본 공사 시 현관문틀 설치로 인해 현관바닥 타일 나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시 포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위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각 평가상의 결과에

견본주택 /홍보물

	마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집공고 시에 제공된 CG(컴퓨터 그래픽), 조감도, 세대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본 공사 진행 중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계획승인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학교관련 유의사항	• 향후 학생배치계획 및 배정방법 등은 관할청 및 교육청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입학 배정학교, 시기 등은 직접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관련 유의사항

구 분	내용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3항에 따른 입주예정자의 4/5 이상의 동의를 받는 사항 외의 사업계획승인변경 및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사항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변경처리 후 사업계획승인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완료 후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 자연지반면적, 인공지반 녹지면적, 생태면적율 등은 축소 또는 증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현
	• 될 시청 시 대시한국, 한한국, 중국활, 구자대구 및 요청한국, 사한지한한국, 한당시한 국시한국, 청대한국활 중은 국모 모든 당기를 구 있으며, 이모 한언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조경(식재, 시설물, 공간계획, 포장 등)은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공과정에서의 단지 현황, 단지 옥외공간의 조화, 안전성 검토 등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동선 등), 조경식재와 조경시설(운동시설, 놀이터, 휴게공간 등)의 수종, 수목규격, 수목위치, 마감재, 디자인, 색채, 포장문양, 시공공법 계획은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대지 현황상 단지 내외부의 레벨차가 발생할 경우 규모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옹벽, 조경석쌓기, 난간, 사면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되고, 주변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축조규모와 형태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입주자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설계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기본계획은 인허가 및 시공과정에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단지의 경계, 선형, 옹벽의 형태 및 색상,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설계변경	• 본 단지의 명칭, 동 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외부 조명시설, 옹벽,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동 출입구, 외부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및 기타「주택법」 「건축법」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은 현장 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시공 시 인허가 및 관청과의 심의 및 협의 과정에서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이 지상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상 주차구획 및 주차대수, 단지 5
	로 및 포장 재질, 형태, 면적, 색상과 조경구간 및 면적, 형태, 식재의 종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시공시 인허가 협의 및 현장여건에 따라 가스정압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상주차장의 주차구획 및 주차대수, 조경 구간 및 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에너지 절약계획 등 인허가의 변경 및 심의기준 준수 등에 따라 옥외 태양광 패널의 설치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태양광 패널의 설치위치, 면적형태, 용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교통영향평가, 장애인시설물 등 인허가의 협의 및 심의과정에서 진입로의 포장면적, 재질, 형태, 선형, 라인마킹 등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교통시설물의 설치위치, 개소, 규격,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의 구조개선을 위해 관계법령 허용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
	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조경공간 등은 실제 시공시 인허가과정 및 현장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기타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정고 확보 및 소방·설비배관 공간 확보를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층고가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재난, 안전, 소방과 관련하여 관련법 및 인허가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시공 시 관련 시설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저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의 외관디자인(마감재 패턴, 색채 및 사인물, 창호 색상 및 형태, 계단실 창호, 난간 형태 및 색상, 지붕 및 옥상구: 물 형태 및 색채 등), 주차장 외벽과 옹벽의 형태, 색상 및 패턴, 외부계단과 문주의 위치 및 형태, 보도 포장 및 형태, 방음벽 등이 실시설계 및 공사 중 시· 사 특화디자인 등에 따라 입주예정자 동의없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내용, 평면(실별 구획 및 면적, 가구 배치 포함), 입면, 단면은 실시설계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 공간에 조성되는 수목의 종류, 수량 및 위치와 외부 시설물의 종류, 형태 및 위치 등은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형 및 각종 홍보물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축소 제작된 것으로 색채, 패턴, 마감 재질, 크기, 조경(수목의 종류, 위치 및 수량, 놀이터, 시설물, 옥외공간 디자인, 배치, 포장 등) 및 각종 시설물(문주, 기계 및 전기 관련실 급배기구, 주차장 램프 캐노피 구조물, 외부 계단 및 엘리베이터실, 부속동 실외기 공간 등) 의 내용이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커뮤니티시설, 층고 및 천장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대지 주위 도로폭, 도로선형, 조경 및 토목 시설물의 위치, 인접도로와의 레벨 차, 옹벽의 높이 및 형태, 공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입주예정자 동의없이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되고 기본 제공되는 가구 및 마감재 등이 현장여건 및 인테리어설계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에 따라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반 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는 단지외 도로와 일부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지 내 레벨은(근린생활시설 포함) 건물 입구 및 인접 도로와의 원활한 연결을 위하여 일부 구간이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서 본 공사 시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건축 및 조경의 변경 등으로 인해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토목, 건축물의 외관 등에 대해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예정)자는 주변 현황, 개발계획, 사업계획승인 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 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변경내용 포함), 건축규제 사항,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교육 등)의 협의 내용(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 에너지 사용 계획, 건축·주차장·학교보건 등 관계 법령 및 조례, 인허가 변경계획 등에 대해서는 열람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공동주택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변 외부도로의 폭은 인접 건축물, 보도 등의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BI/CI(적용 시) 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 조명, 단지 홍보용 및 사인물, 방음벽, 영구배수시 스템 적용 시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외부 및 단지 건물의 인접 동 및 인접 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조망과 향, 일조량, 프라이버시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 하여야 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공동주택(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간거리,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서측에 분묘가 위치해 있어 인접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주변에 위치한 공장 등에 의해 소음, 분진,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옥상(예정) 및 커뮤니티시설 내부의 실외기 공간, 쓰레기 분리수거함 및 생활자원보관시설 인접 세대에는 소음,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 및 건물 높이에 따라 일부 세대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조명형 BI/CI, 항공 장애등 등을 설치할 경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이 설치된 인접 동은 이용에 따른 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냉난방시설에 따른 소음, 진동 및 열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엘리베이터 홀(채광창 유무 포함) 등 공용부분은 공간 크기 및 설계 제약 등에 따라 형태, 재질, 크기, 색채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지하에 계획된 전기실, 발전기실 등으로 인하여 인접 세대의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는 예술장식품은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분양 이후 위치 및 내용이 확정됩니다.
- 주거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 옥상, 전실, 공용계단,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근, 단지 남측 도시계획 도로는 기부채납 예정으로 개설 후 불법주차 등으로 부출입구 이용이 불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와 인접한 건축물로부터 야간의 빛공해 및 환경권(일조, 조망, 소음,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해 계약 전 견본주택과 현장에서 반드시확인하셔야 합니다.
- 단지외부 난간(휀스)은 현장 주변여건 및 준공접수 인·허가과정에서 설치구간, 형태, 위치, 재질,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구간에 한하여 단차로 인한

단지

공통

난간설치가 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쓰레기보관소)은 별도로 설치 될 수 있으며 설치될 경우 위치, 방향 또는 디자인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불 량경관, 소음,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동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지붕위에 주방배기팬 및 탈취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일부 제한되거나,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등 사생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가스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가스 정압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통신기간사업 자, 가스기간사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하자담보 존속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하여 적용되며, 하자보수 절차는 「공동주택 관리법」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단지 공용시설물의 위치 및 개소는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형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단지주변 경계부는 현장 시공여건, 현황 레벨, 인근 도로레벨, 방음벽 등에 따라 단차부 마감에 대한 형태, 재질 등이 실시설계 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단지내 조경식재와 시설물, 옥외공간 디자인, 배치, 포장 등은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그 형태나 재질, 규격, 수량, 배치, 디자인 등 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품개선 및 기능, 구조, 성능,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문주, 도로선형, 부대시설의 추가 및 삭제, 위치 이동, 형태 등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함 위치는 사용성 및 지자체 조례 등의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보관학(세대수의 15% 이내 설치)은 지하2층 관리사무소 주변으로 설치될 예정이나, 실제 시공 시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보관소의 위치 및 개소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공사 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으며, 자전거 보관소로 인해 일부 저층세대에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지하 2층 택배차량을 고려하여 천장고(약 2.7m 이상)가 계획되어 있으나, 본공사 시 설비배관에 의해 일부 높이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동별 주차 배분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동별 주차영역을 한정할 수 없으며, 각 동 출입구까지의 동선 길이와 전실 및 홀의 형태, 크기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일부 구간에는 교차로가 형성될 수 있으며, 교차부분에서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일부공간에는 회차공간이 없어 이용이 불편할 수 있으며, 주차공간의 최대확보를 위하여 기둥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서는 기둥과 간 섭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차량출입구의 형태, 마감재, 컬러, 시공줄눈 등이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으며, 줄눈은 시공시 코킹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환기를 위해 환기탑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치 • 지하주차장 및 지상주차장의 주차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주차구획선은 도서상의 실선을 기준으로 구획되어 주차구획선 표기 시 좌우측 부분에 편차가 발생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현장 여건 및 상위 지침변경의 변경에 따른 인허가의 변경으로 전기차 충전 구획과 충전설비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하여 일 단지 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주차구획에는 일반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차로의 너비는 6.0m이상, 주행면 차로의 유효높이는 2.3m이상, 주차편의 유효높이는 2.1m 이상입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펌프실(기계실) 및 환기휀이 설치되어 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저수조,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기계실 등의 유지관리비용 및 사용비용은 각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주변 도로와 단지 내 레벨 차이로 인해 단지 및 주동으로 진입하는 보행로에 단차(계단) 또는 경사로가 형성될 수 있으며,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CI 및 BI 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신축되는 인접 건축물 및 공동주택에 의해 조망 및 일조권, 환경권이 일부 제한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주동 주출입구 홀,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지붕 등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사용으로 인한 피해발생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단지 내 외부에 계획된 대지레벨 차이에 의해 반영된 옹벽, 조경석, 난간 등은 실시설계 및 현장여건에 따라 형태, 크기, 길이,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 습니다. • 공공의 목적으로 통행되는 필로티 상부 세대는 소음 및 사생활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 마당(힐링가든, 비타가든, 소셜가든, 포켓가든), 어린이 놀이터, 옥외운동시설, 관리동,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설치로 인접한 세대는 소음 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녹지, 조경 식재 및 시설, 포장, 조경부대시설, 동선계획 등의 면적, 위치, 규모, 수량, 크기, 색채, 형태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심의 결과 및 현장 현황 등에 따라 입주민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 시설 등이 상부공간 등에 설치되어 인접세대에 조경, 조망, 일조의 일부제한, 소음 등의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 설치 상세 계획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 휴게시설 및 순환산책로, 어린이 놀이터 등은 입주자를 위한 공동사용 공간이며 각 시설의 조경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설치된 초화정원, 조경공간, 수공간(설치될 경우) 등은 놀이 및 운동공간이 아니므로 입주민의 주의를 요하며, 입주민 관리부재에 의한 하자, 테마식재의 임의의 훼손은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를 오염, 훼손하거나 또는 저층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 및 기타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닙니다.
-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는 단지 내 별도의 수거시설을 사용하여야 하며, 차량을 통해 수거할 계획입니다.
- 배치상 일부 세대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재활용 보관소)이 인접하여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사업승인 및 변경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시공 시 일부 규모, 위 치, 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장(재활용 보관소) 등은 각 동 주변에 설치(설치 위치는 카탈로그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람)되며, 설치 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 망권 및 환경권이 일부 제한되거나,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등 사생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주거동 앞에 입주민의 커뮤니티를 위한 동앞정원이 조성될 경우 이에 따라 소음발생 등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지여건상 각 동마다 그 규모 나 디자인이 다를 수 있으며 조성이 불가능할 수 있을 수 있으니 입주시 그 위치와 규모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불편은 민원요소가 아닙니다.
-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옥외공간의 모든 시설의 관리책임 및 비용은 입주민과 이용자에게 있으며, 입주민의 편의 및 자의에 의하여 단지내외 식재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임의변경하였을 시,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책임이 아니며 이는 민원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놀이터 내 놀이시설물 및 주민운동시설의 실외 운동시설은 자재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소음, 분진 등 사생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각종 조경시설물의 경우 안내사항에 따라 지정된 용도와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용도외 사용, 과도한 하중이나 충격, 시설의 임의적 개조 등 입주민의 사용상 개인부주의 및 관리상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건설사의 귀책사유가 아닙니다.
- 조경시설은 외부인의 접근이 가능하여,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부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경우 수급불가 및 단종, 외부환경 및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대는 필로티 내부에 설치되며, 자전거보관소는 법 또는 사업승인 조건을 충족하는 수량을 설치하며, 설치 위치 및 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대는 필로티 내부 면적 등 주변 여건에 따라 일반 거치대형, 2단 거치대형, 레일 거치대형, 경사 거치대형 등으로 변경 설치될 수 있으며 임의로 보관대 형태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대지 현황 상 단지 내외부의 레벨차이로 인하여 단지 외곽 일부에 옹벽 또는 돌쌓기 등이 설치될 경우, 상세 위치는 설계도서 및 분양자료상 시설물 안내도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장여건에 의해 추가 설치 및 삭제될 수 있으며, 종류 및 위치, 노출범위(높이, 길이), 형태, 마감사양, 디자인 등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에 포함된 조경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부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놀이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 포장, 수목관리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옥외공간에서의 개인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입주민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 단지 경계면 일부에는 외부와의 경계를 위한 투시형 울타리(높이 약 1.2미터내외)가 설치될 수 있으며, 시공될 경우 위치 및 구간, 규격, 디자인은 시공과정에 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대지 경계 바깥 시설 및 녹지, 가로녹지, 공원시설은 시공자의 시공구역에서 제외되니 관련 민원을 시공사로 할 수 없으며, 단지 주변여건에 대해 충분히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나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이며, 입주 후 수목 유지관리 활동은 입주자 관리사항이며 관리소홀로 인한 하자발생 책임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 소방법의 의거, 안전매트 설치구간에는 식재 및 저층세대 차폐시설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저층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소방서 협의에 따라 안전매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차의 진입, 회전, 정차 등을 위한 협의에 따라 조경배치와 동선의 형태, 규모, 조경 및 기타 계획이 입주자의 동의없이 변경될 수 있으나 소방 및 안전과 관련된 변경사유에 대하여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의 소방관련 시스템 및 설비는 본 공사 진행 시 소방관련 법규 및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승인도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특성상 위치, 크기, 동선 등의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101동은 하부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로 인하여 소음, 냄새, 분진, 진동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은 별도로 구획되어 있으며, 단지 출입구와 근접하여 보행자와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방송안테나, 피뢰침, 태양광판넬, 이동통신설비, 야간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경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의거하여 소음기준이 적용되며,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 습니다.
- 단위세대 창, 공용부 창의 열림 방향, 크기 및 위치(홀 및 계단실 3개층마다 1개소에 설치되는 자동폐쇄장치 설치 포함) 등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옥상 태양광 발전 설비는 모든 동에 설치되며 본 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사이즈, 용량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동 저층부의 석재마감 패턴 및 줄눈의 간격은 디자인 및 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주차장 외벽 등에는 일부 석재뿜칠 도장이 적용됩니다.
- 동 저층부는 마감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배면의 석재뿜칠 및 측면의 석재 디자인은 공사시 입주자의 동의 없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및 부대시설의 장애인 램프 위치/길이, 점자 블록 위치/개소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은 지자체 관련부서 협의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코아 내 우편물 보관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 동 출입구, 부대시설, 조경 구간 등 단지 내 설치되는 난간의 형태, 높이, 재질, 색상 등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콘크리트 난간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아파트 지하층 엘리베이터홀과의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 폭, 연결층 및 층수는 각 주동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을 하고, 이에 대한 민원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 지하층 출입구까지 접근 동선이 주차구획, 장애인주차구역 등으로 일부 동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로비, 필로티, 공용홀 등의 평면, 입면 계획과 해당부위 적용 마감재 등은 실시설계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옥상난간 턱 높이, 난간형태 및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창호계획 및 공용부 창호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동 지하층 출입문 및 1층 로비 방풍실 출입문은 마감을 고려하여 문 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필로티층 상부에는 주택관련 법규에 따라 주동 출입동선 및 기타 보행자 안전에 필요한 부위에는 캐노피가 설치될 수 있으며, 캐노피 주변 세대에는 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부 입면의 형태(옥상 조형물, 외벽줄눈 문양, 저층부 석재, 동 출입구), 재질 및 색채 등은 구조내력확보, 미관개선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ᢏ┌ │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에 노출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주동에는 단지 내외간의 레벨 차에 의하여 일부 세대의 전/후/측면에 경사면 처리공법에 따라 옹벽, 보강토블록, 자연경사 처리구간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내 유지·보수 점검을 위한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는 일체 마감이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의 일부 구간에 상부 실로 인해 설치되는 단열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시청안테나 및 위성안테나는 102동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며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한국전파진흥협회(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이동통신용 구내중계설비는 101동,102동 지하3층에 설치 될 예정이며, 장비들의 간섭, 전파 장애 또는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동 저층 세대는 단지 내 보도, 차로, 비상차로, 쓰레기수거차량동선 등의 설치시설에 따른 시각적 간섭 및 소음,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계약 전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 승강로 및 최상층 승강기 기계실에 인접한 세대, 승강로와 접한 세대의 경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고 계약 바랍니다.
- 엘리베이터의 속도 및 규격·사양은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검토한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입면계획에 의해 장식물·동번호 등이 외벽에 설치될 수 있음. 모형과 홍보물과 달리 변경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의 각종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과 엘리베이터홀 천정부분 등을 공동 사용하며, 배관 배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엘리베이터 홀에 결로 방지를 위한 장비가 설치될 경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공용 전기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동파가 우려되는 설비 배관에는 동파 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전기실 및 발전기실 등에 인접한 동은 발전기 비상 가동 및 주기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가동으로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하고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주동

- 제연구간에 해당되는 엘리베이터 홀과 연계된 단위세대 현관문에 차압측정공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으며,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당할 수 있 습니다.
- 지붕에 설치되는 우수 처리를 위한 배수구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개소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건물의 높이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은 주동 주출입구에서 단지 중심부(놀이터 등)까지 동선이 길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필로티 미설치, 차량동선과의 중첩 등), 계약 전 견본주택과 모 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공용부 마감이 다소 매끄러운 타일 또는 물갈기 석재가 시공된 부위는 미끄러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엘리베이터 홀 출입구 및 홀의 형태는 동별·호수별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전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의 마감사향은 지하층, 1층, 2층 이상의 기준이 각각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에는 태양광판넬, TV안테나, 통신중계기 등 각종장비가 설치될 수 있으며,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 동의 외벽 상부에는 피뢰설비가 설치된니다
- 주방후드, 화장실 환기휀 등 각종 급배기시설이 각 세대 외벽에 노출되어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고 인접세대의 사용에 따라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 모형 및 각종 홍보물(분양 카달로그, 전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시설의 내외부 디자인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내외부 마감재 색상, 재질 및 패턴, 내부 평면 및 구조, 창호 재질 및 형태 등은 실시설계 및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되는 계약면적 변경이 계약체결 이후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비실 및 주차차단기의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등은 지하주차장과의 방화구획 기준에 따라 경계벽면에 출입구(방화문)를 제외한 개구부가 미설치됩니다.
- 커뮤니티, 어린이집, 경로당, 관리사무소 등의 실외기는 외부 또는 지붕에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진동, 수증기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 세대의 환 경권(조망, 일조, 소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자전거보관소 설치로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쓰레기분리수거 및 생활자원보관시설, 주차장의 운영·유지·보수·관리 방안은 추후 관리주체가 결정하여 운영합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별 주차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되었으나, 모든 주차구획은 구조적으로 동별, 세대별로 구획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 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차구획 운영은 관리주체기 결정하여 운영합니다.
- 차량진출입, 경사로 부분은 차량통행 시 차량경고등 및 경고음, 노면마찰음 등 으로 인한 빛 공해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

- |부대복리||• 지하주차장 중간층 구간은 방수 적용 구간이 아니므로, 강우, 강설 시 차량에 붙은 눈, 빗물로 인해 물이 유입될 시 하부층에 누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시설/ │• 주차장 차로 높이와 주차구획 유효높이는 분양 후 실시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일부 대형차 등의 진입이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 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설 ㅣ•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준공 후 전기차충전설비의 전기 사용량 계량을 위해서 관리사무소 명의의 한전 계량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지하주차장 및 지상주차장에 분산 및 배치될 수 있으니 동별 접근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의 건축계획 변경에 따라 규모가 일부 변경될 수도 있으며,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도로에서의 진입 레벨 등도 공동주택 계약자 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1동 하부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인근 저층세대는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소음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 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단, 실외기 위치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102동 5호라인 1층에는 경로당이 설치되며, 인근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사용자 및 설비(실외기, 보일러 등)시설의 소음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단, 실외기 위치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103동 1호, 2호라인 1층에는 어린이집이 설치되며, 인근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사용자 및 설비(실외기, 보일러 등)시설의 소음 등 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단, 실외기 위치는 시 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102동 1호라인 1층에는 작은도서관이 설치되며 인근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사용자 및 설비(실외기, 보일러 등)시설의 소음 등으

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단, 실외기 위치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101동 2호, 4호라인 1층에는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며, 인근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사용자 및 설비(실외기, 보일러 등)시설의 소 음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단, 실외기 위치 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의 부속시설물(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계단실, DA 등) 인근의 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소음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옥상 또는 외부에 실외기가 설치됨으로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소음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단, 실외기 위치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 • 공동주택 계약자의 경우, 공동주택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면적 과다, 공용시설물(진출입구 등) 공동사용 등과 관련하여 사업주 체 및 시공사, 관리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근린생활시설관련 주차시설 등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 지하층 출입구까지 접근 동선이 부대복리시설, 주차구획, 장애인주차구역 등으로 일부 동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는 추후 결정 및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계획승인도서 및 준공도서에 실선으로 표기되어 있는 고정형가구(주방가구, 신발장, 락커 등)는 설치되나 이동식 가구(책상, 의자, 테이블, 소파, 인테리어 비품 등)는 제외됩니다. • 또한 붙박이형 가구의 형태는 카달로그에 게시된 그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실,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승인 및 변경도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천장고는 시공성 및 설치, 전기배관 등의 간섭으로 인해 다소 변경(증감)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이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 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 건축법시행령 」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적법하게 설치된니다.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 내 위치, 층수, 주변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 로 견본주택의 모형 및 현장여건을 충분히 숙지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일부 세대는 인접건물에 의해 조망, 일조 등이 침해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예정자분은 필히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등기구 수량, 램프 및 배선기구 수량 등이 확장형에 비해 줄어들거나 크기가 축소될 수 있으며, 사양(램프용량 및 종류)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비확장 세대의 경우 인접한 확장형 세대와 면하는 발코니에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실 시공 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천장에 스프링클러 설치, 골조 높이 상이, 추가 단열재 시공 등으로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 세대 천장부위에 단열 및 배관시공으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깊이 및 크기, 등박스의 크기, 시스템에어컨(옵션선택시), 스프링클러 헤드, 환기 디퓨저 등의 위치 위 공통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세 • 본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렌지후드, 위생도기, 수전, 액세서리, 조명기구, 배선기구류)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는 마감치수 및 CH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습니다. • 단위세대의 거실 및 침실의 천장고는 2,300mm이며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안목치수는 발코니확장 시 마감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발코니 미확장 또는 유상옵션 마감 적용에 따라 각 실별 내부 안목치수가 다소 축소될 수 있습 니다. • 단위세대의 안목치수(POP 포함)와 본공사 시 안목치수는 시공오차 범위 내에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가구 및 가전배치 계획 시 현장 실측치수를 적용하여야 한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 공간구성 및 형태, 마감재 수준 및 내용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창호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PVC 창호 및 가구 등은 견본주택 용으로 본공사 시 입찰에 의해 동등 마감의 제품으로 선정하여 시공됩니다.
- 침실 및 욕실 도어 프레임 사이즈, 재질, 단차,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의 제품 디자인(색상, 무늬, 재질 등)은 공사진행 중 불가피한 사유(특허 및 의장등록, 자재의 품절 및 품귀, 제조사의 부도 및 수급의 불안정)로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유사 디자인의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디자인(색상, 무늬, 재질) 및 배치가 다소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에 적용 될 시스템가구의 제조사, 디자인, 수납구성, 시공디테일, 설치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목재문, 가구 및 디자인월 등 인테리어 시트는 자재의 특성상 색감 및 문양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노출될 수 있고 이는 하자가 아닙니다.
- 인조대리석, 타일, 벽 패널, 디자인월, 복도 패널 등의 마감재는 나누기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아트월 부위는 줄눈채움 시공되지 않으며, 벽걸이 TV 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할 수 있고 하부에 배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주방, 침실에 사용되는 마루자재는 견본주택 및 홍보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 실제 제품이 상이할 수 있으며,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 한 청소시 고유의 특성상 장시간 수분노출로 인한 변형, 비틀림의 우려가 있습니다.
- 인조대리석(주방상판) 및 강화석재류(화장대상판, 디딤판, 욕실선반)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으며, 사용상 부주의로 인하여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하자가 아닙니다.
- 인조대리석 및 강화석재류는 자재의 특성상 이음부분이 노출되거나 상세가 변경될 수 있으며, 타입별로 면적, 규격, 두께, 위치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층간차음 구조 및 기준은 2022년 8월 4일 이후 개정된 사후확인제 대상이 아닌 사전 확인제 대상(경량 58데시벨 이하, 중량 50데시벨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기타 확장 부위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추위를 느낄 수 있으나, 소비자의 관리부족으로 인한 하자보수는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 및 세대 간 벽체 종류는 분양면적 내에서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이 불가합니다.
- 주방가구, 붙박이장, 드레스룸 시스템가구, 팬트리룸 시스템가구, 욕실장 등의 수납공간은 타입별 평면형태 및 면적에 따라 설치위치와 사이즈, 디자인, 수납량, 수납기능이 상이합니다.
- 작업통로로 사용하기 위한 세대간 벽의 임시 개구부는 세대간 소음기준에 충족되도록 조적벽 또는 경량벽체로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콘크리트 벽체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와 단열재 설치 및 결로 방지 단열재 설치 등을 위하여 콘크리트 벽체의 일부가 이격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콘크리트 벽체와 조적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하자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 깊이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다소 축소되어 시공되어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일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되어질 수 있습니다.
- 타입별로 기본제공 품목 및 추가 선택품목이 상이하오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최초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어 시공이 되며, 계약 이후 배선, 배관 등 관련 설비공사에 따라 선택변경이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 내 추가선택품목 가전(빌트인 냉장고/빌트인 냉동고/빌트인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의류관리기 등)은 유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양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저층부 석재 등 마감 적용 시, 별도 마감적용 부위의 세대 및 공용부 창호의 폭과 높이가 마감을 위한 필요한 치수만큼 축소 또는 외부 마감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 부속동과 인접한 세대는 지상 또는 옥상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열기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 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 시 결로현상이 심 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 및 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계약 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샤워부스, 욕조, 현관, 주방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샤워부스는 접합유리로 시공되며, 본 공사시 타입별에 따라 크기 및 규격 등이 상이하고 협력업체와 계약관계에 따라 디자인 및 디테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거실 벽체 패널 및 타일 선택 시에는 걸레받이 미시공됩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

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욕실 및 발코니의 문턱 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욕실화의 높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욕실 천정에는 배관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크기 및 개소는 본 공사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현관에 추가선택품목으로 선택할 수 있는 현관 중문은 세대 내 인테리어를 위해 설치되는 품목으로 단열을 목적으로 하는 창호설치가 아니며, 바닥 및 천장에 프레임 및 레일이 설치됩니다.
- 추가선택품목으로 현관 중문 선택시 일부 세대는 벽체의 형태, 길이 및 신발장의 길이가 상이할 수 있으며, 상하부의 레일과 상부 및 측면의 문들 및 프레임이 노출시공 됩니다.
- 추가선택품목(가구, 가전 등)은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선택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전 상담 및 도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실외기용 대용량 전원은 반드시 실외기실에서 공급받아야 하며, 실외기용 전원은 전 세대 단상(1Ø x 220V x 60Hz)가 공급되며 삼상 전원의 실외기는 연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냉매 매립배관은 거실(스탠드형), 안방(벽걸이형)에 기본 설치됩니다.
- 에어컨 설치 시 실외기 설치 위치는 실외기실에 계획되어 있으며, 실외기실 출입문과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사용자가 직접 설치하여 야 합니다.
-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내외부 온도차에 의해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재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보관된 물품 이 훼손 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이 인접한 실에는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선홈통의 개소와 위치는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발코니 및 다용도실에는 배수 드레인 및 선혹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다용도실, 실외기실, 욕실, 현관, 발코니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경우, 바닥구배 시공 및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에 따라 타일 나누기, 천장 높이 및 단차가 도면 및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오수 및 우수 배관, 바닥드레인 및 수전은 견본주택 내용에 따르되, 위치 및 개소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개수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후드장 상부는 수납이 제한적입니다.
- 주방 상부장 뒷면 또는 측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므로 가스배관이 지나가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 콘센트, 통신수구 및 스위치의 위치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은 전 타입 침실2 또는 침실3 출입문 뒤편에 설치가 되며 월패드는 거실 또는 주방측 벽체에 설치되며,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벽 및 세대간벽, 층차이부분 등에 단열재가 설치되는 부위는 결로 발생으로 인한 하자방지를 위하여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부분적으로 벽체구성 및 마감의 바탕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 경량벽체인 경우, 중량물 설치나 못박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량물 설치 및 못박음 시에는 벽체의 파손 또는 설치된 중량물의 탈락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천장석고보드부위와 벽체석고보드부위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설치하여야합니다.
- 단위세대별 치수에는 천장 몰딩이나 하부 걸레받이 등의 치수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입주 시 실측을 통하여 가구, 가전제품 배치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천정 상부 몰딩의 규격 및 형태, 재질,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준합니다.
- 욕실벽(PD 포함) 및 기타 조적벽 등은 현장 시공여건에 따라 일부 비내력 골조 혹은 경량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그릴의 경우 수동개폐형 제품으로 시공되며, 에어컨 가동전 반드시 입주자가 직접 개방 후 이용해야 합니다.
- 실외기실 그릴에는 방충망이 설치되며, 본 공사 시 협력업체의 계약에 따라 색상, 재질,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계약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세탁기 및 건조기 용량 및 모델에 따라 발코니 내 병렬 또는 상·하 직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입주 후 배치를 결정해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에 설치된 대피시설은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므로 물건을 적재할 수 없고,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빨래 수전 사용시 사용 편의를 위한 별도의 시설은 없습니다.
- 단위세대에 설치된 전열교환기 급, 배기 디퓨져는 견본주택 설치사항을 참고하고, 위치 및 개소는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전열교환기 설치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발코니(실외기실, 세탁실 포함)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될 수 있고, 사양, 위치, 개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거나 급수가 되지 않는 /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되었습니다.

• 발코니에는 필요시 선혹통 및 드레인의 위치, 개소가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선혹통 배수관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일부 돌출될 수 있 습니다. •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입주 후 관리소홀로 인한 동파는 하자가 아닙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세탁기, 손빨래, 청소용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및 기타 발코니의 외부창호 및 난간턱 높이와 수벽의 높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내부의 선홈통 및 배수구는 우수 처리를 위한 것으로 위치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실외기실 그릴 창호 형태, 색상, 크기, 손잡이, 재질, 개폐방 식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옵션선택 시 실외기실에 에어컨 냉매배관이 노출되어 시공 됩니다. • 발코니2에 설치되는 덕트, 에어컨배관, 스프링클러 배관 등이 노출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확장 시 발코니2 출입문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터닝도어가 시공되며, 본 공사시 제품의 사양, 디자인, 규격, 유리 등이 확정 될 수 있습니다. • 펜트타입 세대와 최하층 세대를 제외하고 하부세대로 피난을 위한 하향식 피난구가 대피공간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소음발생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하 여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실외기실│ • 대피공간의 최하층(필로티 세대 포함)에는 외부로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창호 및 완강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물건적치 등으로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소방관계 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하향식 대피구는 충별, 세대별로 위치가 상이하며, 이에 따라 전동빨래건조대 위치도 충별, 세대별로 상이합니다. •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하향식 피난구는 방수를 고려하여 다소 돌출되어 시공되고 본공사 시 견본주택과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며, 과도한 물의 사용으로 인해 하부 세대에 누수가 발생될 수 있으며, 천장에 오픈되는 피난구에서 내려오는 사다리가 충분히 내려올 수 있도록 해당 공간에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하향식피난구 커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로 설치된 것으로 본시공 시 디자인, 형태, 색상, 마감, 규격, 위치, 개폐방향 등이 달 라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면적 중 서비스 면적(서비스 면적 초과 부분은 전용면적 산업)은 공급면적에 미포함되어 있는 비주거공간이며, 테라스는 하부층 지붕을 사용하는 공간 으로 관계법상 서비스면적이 아닙니다. • 펜트타입(103, 115, 121A, 121B, 121C)의 테라스는 옥상과 동일하게 대지지분, 공용면적 등과 상관없이 해당 타입에서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등기 등 재산권 행사는 불가능합니다.(단, 배타적으로 사용 시 유지보수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공용부분으로 관리주체가 공용의 목적으로 출입 내지 개방을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 펜트타입(103, 115, 121A, 121B, 121C)의 테라스에는 우수처리를 위한 배수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시 입주자의 별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 일부세대는 대피공간에 화장실 배기관이 설치되어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 및 진동,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및 공용부 창호의 크기, 두께, 사양, 개폐방향, 개폐범위, 창호 프레임 등은 시공 시 선정되는 제품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전체 고정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외부 석재마감 구간의 단위세대 및 코아부에 설치 창호는 마감 시공을 위해 일부 창호의 크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출입문 재질은 결로 등에 대한 성능향상을 위해 재질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철재문 및 방화문류의 설치 위치, 크기, 형태, 디테일은 시공성 및 성능개선을 위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창호 • 창호의 열림 방향 및 규격 등은 입주자의 사용 환경 및 아파트 내/외부 마감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승인 변경 및 경미한 설계변경을 통해 견본주택의 형태 와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주방에 면하는 다용도실 도어는 단열성능이 있는 로이복층유리 PVC 도어로 설치됩니다. • 아파트 내외부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은 내풍압을 고려하여 세대별, 충별, 침실별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내외부 창호의 유리사양 중 Low-E 유리의 설치 위치는 결로 및 단열 등의 성능을 고려하여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홈네트워크 외부제어시스템/홈IOT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부 전기, 설비공사상 일부 노출배관의 시공이 불가피할 경우 미관을 해칠 수 있으며, 실사용 면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기 │ • 벽걸이 TV 설치 시 전선, 케이블, 콘센트, 단자함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월패드, 부부욕실 스피커폰 등의 전화 수신 기능은 국선 전화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설비 📗 스위치, 콘센트, 온도조절기, 환기스위치, 월패드, 주방TV, 욕실 스피커폰, 일괄소등 스위치 등은 제품 기능향상과 사용성 및 미관 개선을 위해 색상, 디자인, 설치위치, 수량, 버튼구성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설치되는 콘센트는 법적 기준에 의거하여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가 일부 설치됩니다.

- 세대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및 배선기구류, 통신단자함, 전기분전함 등의 설치 위치 및 수량과 디자인은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에 의해 세대내 분전함 및 통신단자함은 침실3 출입문 뒤편에 매립되고, 분전함 커버는 노출시공되며 위치 및 사양과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TV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정수기, 전자렌지, 전기밥솥 등의 배치시 간섭될 수 있습니다.
- 일괄소등 스위치의 가스밸브 차단기능을 실행할 경우 가스밸브가 자동으로 잠기게 되며, 복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자가 주방에서 직접 수동으로 복구 하여야 합니다.
- 일괄소등 스위치의 승강기 호출기능은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위한 호출 기능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 기본 제공되는 계약용량 및 분전설비 외 계약자에 의해 증설되는 전기용량과 배관, 배선 등은 계약자가 직접 공사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2의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서 가스계량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발코니2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노출되어 설치되며, 타입별로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고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내 가스배관은 본 공사시 설치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덕션 유상옵션 선택 시 가스차단기+캡마감으로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소방설비는 견본주택용이며, 본 공사 시 스프링클러 배관관경 및 기준개수 등 소화시설물 기준은 수리계산에 의해 설계도 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설비배관과 관련하여 PD 점검구가 세대 내에 설치될 수 있고, 세대 욕실 천장에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 시 위치 및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피트층 포함)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 휀이 노출됩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최하층(2개층), 최상층(1개층) 세대 내부에는 동체감지기가 설치되며 이는 세대의 방범 설정을 해야만 작동하고 위치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주방가구 개수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되고, 후드가 설치되는 장은 수납이 제한적입니다.
- 본 공사 시 씽크대 하부 난방분배기에 연결된 노출 온수파이프는 보온 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 주방 발코니의 가스미터기 설치 위치에 따라서 선반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며, 상부 덕트의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급배기를 통한 환기를 위하여 세대 환기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천장마감 없이 노출된 형태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 각 세대 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사업계획승인 도서에 준해서 설치될 예정이며, 성능개선 및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 및 개소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내 환기 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덕트 등이 노출되며,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실내로 전달될 수 있고, 건축 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장비는 사양이 변경될 수 있으며, 환기장비 설치 등으로 발코니 천장 높이 및 문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일러 연도는 기능상 외벽으로 돌출되어 시공됩니다.
- 단지 내 주차장 및 펌프실, 전기실 등의 환기와 제연팬의 급기/배기를 위하여 D/A(환기구)가 각동 1층 필로티 및 지상층에 설치되므로 사전에 도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 시 위치 및 개소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영구배수 시설은 시설 유지 비용이 발생됩니다.
- 건물 외벽에는 각종 설비(환기, 냉난방, 가스, 정화조 등)를 위한 배관, 덕트, 환기캡, 보일러 연도 등이 노출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될 수 있고, 소음, 진동, 냄새, 해충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에어컨설치를 위한 벽체매립 냉매배관 박스가 거실과 안방 벽면 설치되며, 거실 아트월 벽면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1호에 의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에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표기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기초나다 서계기조	단열 조치 준수 (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1호)	바닥 난방의 단열재 설치 (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 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M/T M/26 M/T)	방습층 설치 (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조건 준수
기계나다 서계기조	고효율 가정용보일러 (다목)	적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적용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2호)	고효율 전동기 (라목)	적용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최소소비효율기준 만족 제품 (0.7kW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 송풍기용 제외)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 (마목)	적용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효율의 1.12배 이상 제품
	절수형설비 설치 (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 (사목)	적용	세대 내 각 실별
	수변전설비 설치 (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조명설치 (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제7조 제2항 제3호)	대기전력 자동차단 장치 설치 (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 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마목)	적용	단지 내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차장 차로의 폭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6m	2.3m	2.3m~4.0m

※설치예정 주차대수 : 626대(단, 주택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건 변화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주차대수 및 주차단위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라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구 분	내진능력(MMI 등급)
내진중요도 1(I등급)	VII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애 관한 규칙」에 의거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MMI등급, I~VII)로 표기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정보통신감리
상호	㈜디엠이엔지종합건축사사무소	㈜삼우공간건축사사무소	㈜정엔지니어링	㈜정엔지니어링
금액	2,009,524,000	547,664,000	452,320,000	60,280,000

※상기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공동주택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82025-101-0004800 호	₩107,292,640,000-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중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ㆍ허위계약ㆍ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

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 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 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 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양형(차입형) 토지신탁 관련 특약사항

- 본 공급물건은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인 ㈜도시의꿈,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 및 시공사 은성산업㈜, 은성건설㈜ 대출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간 체결한 차입형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하고 분양계약(공급계약)의 체결로써 다음 사항 전부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본 공급계약에서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는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및 신탁재산 범위 내에 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계약으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도시의꿈이 부 담하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 본 공급물건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바,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해제나 해지(개별 수분양자에게로의 소유권 이 전을 위한 일부해지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 등의 사유로 시행위탁자인 ㈜도시의꿈과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 해지되는 경우, 분양계약(공급계약)상 매도인의 지위 및 본 사업상 시행자(사업주체)의 지위에 기한 시행수탁자의 모든 행위 및 권리와 의무는 시행위탁자인 ㈜도시의꿈에게 별도의 조치 없이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 분양계약자는 본 분양물건은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시공사인 은성산업㈜, 은성건설(주)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며, 시공사 교체사유 발생 등으로 인한 시공사 교체(건축물브랜드, 명칭 변경 포함)시 수분양자는 사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단, 시공사는 시공상 하자에 한정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함)
- 신탁계좌로 입금된 분양수입금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기준"에 근거해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상환, 기타사업비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확인합니다.
- 본 공급계약상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 한국투자부동산신탁㈜는 중도금대출 알선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분양계약자는 중도금대출기관 미지정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 및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 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특약사항의 각 내용은 본 모집공고의 모든 내용에 우선합니다.
- 공급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 체결일 이후 내·외장 자재의 수급여건, 현장시공 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자에게 사전 통보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 관련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통보 절차를 거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 목적물은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는 일체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예외적으로 한국투자부동산신 탁㈜가 매도인 또는 공급자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는 신탁계약이 정한 업무범위 내 및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현존하는 신 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부담하며) 분양대금 반환책임 등 기타 매도인으로서의 모든 책임은 시행위탁자인 ㈜도시의꿈에게 있음을 인지합니다.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표시사항

※ 부동산개발업자 :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서울시 190082호 ※ 주영업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7층(대치동) ※ 인허가 사항 : 2022년 03월 16일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령군 2022-건축허가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 ※ 공급대상물 소재지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좌학리 139-1 외 10필지 ※ 지목(대표) : 체육용지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대지면적 : 15,360㎡ ※ 건축면적 : 2,087.8902㎡ ※ 연면적 : 75,019.7847㎡ ※ 용도 : 공동주택 46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건축규모 : 지하 4층~지상 39층, 아파트 3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2023년 02월 20일 착공신고 수리완료 ※ 2026년 04월 준공예정 ※ 2026년 07월 입주예정 ※ 건축주 겸 신탁업자 : 한국투자부동산신탁㈜ ※ 분양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 시공사 : 은성산업(주), 은성건설(주) ※ 위탁사 : ㈜도시의꿈 ※ 분양대행 : ㈜가온디앤디 ※ 분양대금관리방법 : 신탁사 자금관리(분양형 토지신탁) ※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 대지소유권 : 100% 소유권 확보 ※ 소유권 이전형태 : 잔금 완납시 지분등기 ※ 본 공고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건축허가 변경 여부,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내용은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지 인근 교통시설과 주변환경 및 개발계획 등은 해당기관,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시행수탁사)	위탁자(시행위탁사)	시공사
회 사 명	한국투자부동산신탁㈜	㈜도시의꿈	은성산업(주), 은성건설(주)
주 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7층(대치동)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94, 2602호(상남동, 엠케이오피스텔)	경기도 과천시 새술막길 14, 2층 (중앙동)
법인등록번호	110111-7125720	175011-0026235	124311-0001597 135511-0295383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함)
- 홈페이지: http://www.다산월드메르디앙센텀하이.com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다산 월드메르디앙 센텀하이 견본주택(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472) / ☎ 1566-4630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부 방침에 따라 주52시간 근무제가 본 견본주택에도 적용됩니다.
- ※ 보다 자세한 공사 범위 및 마감재의 확인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사업은 월드건설산업(주)에서 "월드메르디앙" 브랜드만 제공한 사업장으로, 본 사업의 책임준공 및 하자보수 등 사후 관리는 시공사 은성산업(주) 및 은성건설(주)에서 수행한다.